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세계화·국제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적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하여 있건, 수 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변천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주변환경의 변동은 자연히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외면 세계까지 영향을 주어 물질과 정신의 불균형에서 오는 많은 사회·문화적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곧 위기의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갈등과 혼돈은 가장 민감한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의식, 가치관, 생활양식 등과 같은 청소년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겪는 발달 특성과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심각성은 배가된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의식, 가치관, 행동양식 등과 같은 제요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제도나 사회적 환경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내·외면을 바르게 육성·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청소년활동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품성을 구비한 청소년지도사를 양성, 청소년 활동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지도분야는 고도의 지적·기술적 능력과 체계적인 준비 교육이 요청되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원리에 따라 활동중심의 내용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론과 기술을 종합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와 보다 넓은 연수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는 양적 증가 중심의 운영에 따라 우수한 기능과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지도자의 양성기능이 미약하며, 교사·사회복지사·생활교육전문요원 등과 같은 유사 관련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수생 선발 기준, 교재개발의 체계성 미비, 형식적 자격검정제도 운영, 지도사 배치 및 활용도 미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제반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청소년지도사 양

성사업 본연의 목표를 원할하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에 관한 기존의 축적된 연구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어떤 결정적인 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기 보다는, 이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지도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균형있게 습득할 수 있는 내실있는 연수과정 개발과 보다 장기적인 전문과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질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육성을 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한 과정으로 개발시키는데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보고서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이수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연수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었으므로 각 부문별로 구체적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모색 방향은

첫째, 연수생선발 기준과 경력인정 범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이수과정의 차별화와 교과과정의 이론적 체계화를 정립하여 이수과목을 재구성하고 이수시간을 조정한다.

셋째, 형식적인 자격검정을 탈피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격검정문제의 등급별 난이도를 조정하고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와 활용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I. 청소년지도자 양성 제도현황

1. 청소년지도자 양성현황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자의 정의는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계기관 기타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규정함으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를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양성과정은 양성기관지정, 청소년지도사 등급 및 등록요건, 연수생 선발기준, 이수과정, 자격검정,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청소년지도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수계획, 연수실적, 교과과정의 편성, 강사요원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연수경비의 조달계획,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문화체육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대학 등을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자격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표 II-1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자격요건

구 분	역 할	자격(등록) 요 건
1 급 청소년지도사	수련활동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계획, 편성, 실천,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의 운영관리	○ 대졸자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3년이상인 자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후 종사경력 3년이상인 자
2 급 청소년지도사	소속기관 수련활동의 기획, 편성, 운영 또는 구체적 개별적인 수련활동 운영관리	○ 대졸 및 전문대학졸업 후 종사경력 2년이상인 자 ○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후 종사경력 2년이상인 자
3 급 청소년지도사	일정규모이하 수련시설의 구체적 수련활동이나 교육을 직접담당	○ 전문대 졸업 자 ○ 고졸 후 종사경력 2년이상인 자

연수생의 모집공고는 등록신청 마감일 20일전에 공고문게시, 신문광고, 공문, 기타회보의 방법에 의하며,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원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자격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등록신청(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등)서류를 청소년지도사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연수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개인별로 경력, 직업, 학력을 구분하여 종합점수화하고 고득점 순으로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경력, 직업, 학력순으로 선발한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구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 및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 표 II-2 > 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 및 이수시간

구 분	1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2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3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과 목	이수 과정	과 목	이수 과정	과 목	이수 과정
교양영역	교양특강	16시간이상	교양특강	8시간 이상	교양특강	4시간 이상
전공영역	18과목	9과목, 144시간이상 (1과목당16시간이상)	20과목	6과목, 96시간이 상 (1과목당16시간이상)	7과목	7과목 총 38시간 이상
실습영역			현장실습	16시간이상	현장실습	8시간이상
합 계		10과목 160시간이상		8과목 120시간이상		9과목 50시간이상

청소년지도사 양성 연수운영규정에 의하면 연수생 수료자격은 총 연수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수강하고 이수과목별 이수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평균성적이 60점이상인 자만이 수료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지도사 이수과정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중에 지도사이수과정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에 상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즉, 석사학위이상을 취득 또는 수료한 자(1급청소년지도사 과정),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수료한 자(2급청소년지도사 과정),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졸업예정 자(3급청소년지도사 과정)는 각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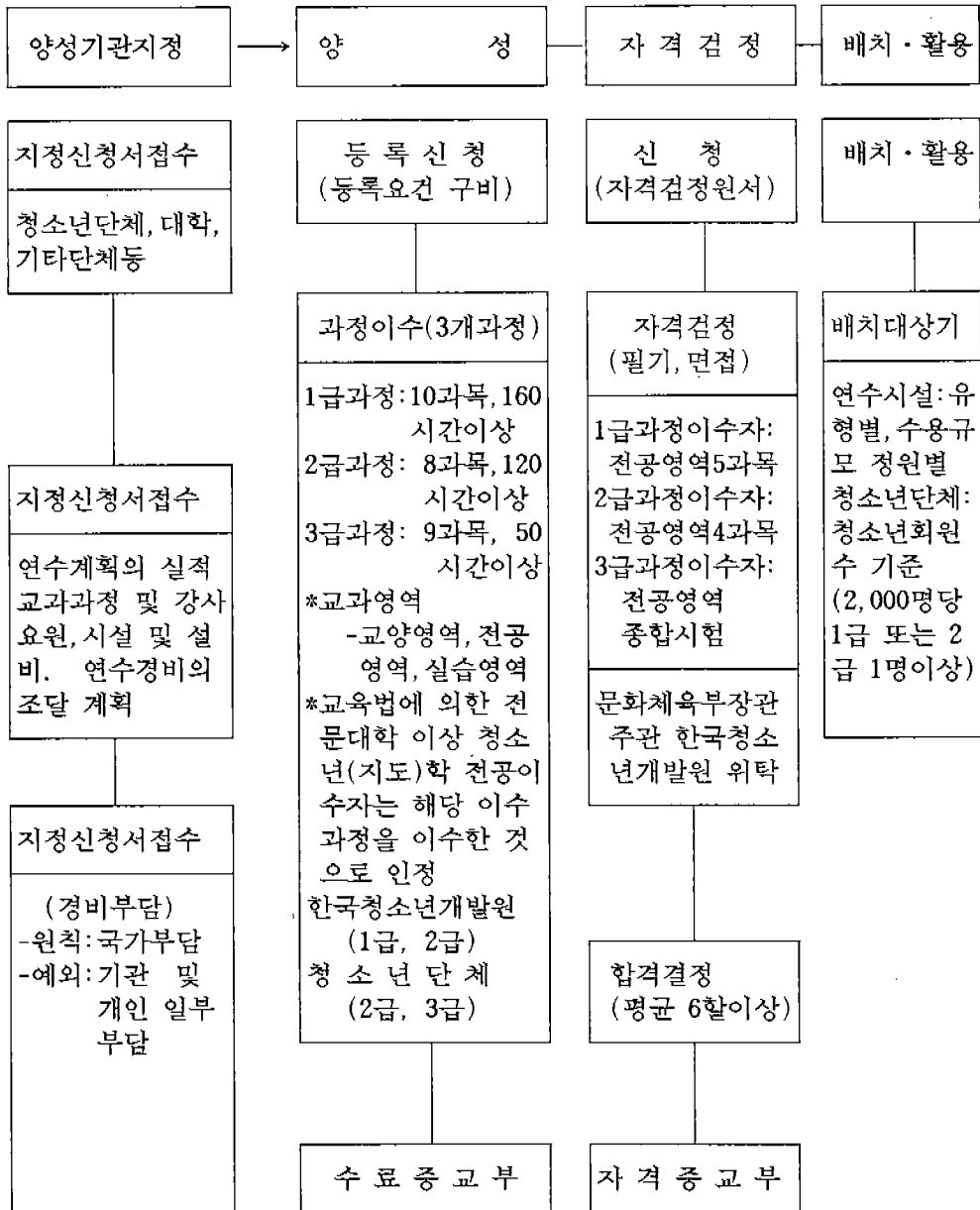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방법, 검정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는 시행일 1월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기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하고, 자격검정 실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에 해당 지도사이수과정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지도사양성기관과 자격검정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청소년자격검정은 필기시험 (1급청소년지도사 : 5과목, 2급청소년지도사 : 4과목, 3급청소년지도사: 7과목 종합시험)과 면접시험이 있다.

합격자결정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면접시험의 방법·채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검정과목중 어느 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4할미만인 불합격자로서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6할이상 득점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 집, 제1종 유스호스텔, 제2종 유스호스텔, 제3종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실 및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단체로 각각 구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양성 체계를 정리하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1급, 2급, 3급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또는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졸업(수료)한 후 국가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에 배치·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II-3 > 청소년지도사양성체제도



2. 유사관련 자격제도

1) 청소년상담원

청소년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원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청소년상담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대학 또는 기타단체 등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담원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청소년단체 등은 연수계획, 연수실적, 교과과정 편성, 강사요원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설비에 관한사항, 연수경비의 조달계획,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의 상담원 양성기관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원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청소년상담원의 등급은 1급, 2급, 3급청소년상담원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표 II-4 > 청소년상담원 등급별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1급청소년상담원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2. 2급청소년상담원으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2급청소년상담원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3급청소년상담원으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급청소년상담원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이수과정·이수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고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이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면제할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 및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 표 II-5 >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별 이수시간

구 분	교과과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실습	세미나	
1급청소년상담원	○ 청소년 행동평가	30시간	40시간	20시간	90시간
	○ 상담교육(수퍼비전)	40시간	40시간	20시간	100시간
	○ 상담행정	20시간	20시간	20시간	60시간
	○ 비교 상담정책	30시간	-	20시간	50시간
	○ 상담발달사	40시간	-	20시간	60시간
	○ 한국사회와 상담	40시간	-	20시간	60시간
	○ 상담이론 세미나	-	-	40시간	40시간
	○ 상담문제 세미나	-	-	40시간	40시간
	계	200시간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
2급청소년상담원	○ 상담과정과 기법 I	30시간	20시간	20시간	70시간
	○ 상담과정과 기법 II	30시간	20시간	20시간	70시간
	○ 상담과정과 기법 III	30시간	20시간	20시간	70시간
	○ 가족상담	30시간	20시간	20시간	70시간
	○ 집단상담	30시간	20시간	20시간	70시간
	○ 학교상담 · 산업상담	30시간	40시간	40시간	110시간
	· 기관상담중 택1				
	○ 청소년상담정책	20시간	-	-	20시간
	○ 청소년이상심리	20시간	-	-	20시간
	계	220시간	140시간	140시간	500시간
3급청소년상담원	○ 청소년발달	30시간	-	-	30시간
	○ 청소년 생활지도	30시간	-	-	30시간
	○ 청소년 심리검사	30시간	30시간	10시간	70시간
	○ 상담이론	60시간	-	-	60시간
	○ 상담면접	60시간	60시간	20시간	140시간
	○ 진로상담	30시간	30시간	10시간	70시간
	○ 학업상담	30시간	30시간	10시간	70시간
	○ 청소년 문화	30시간	-	-	30시간
	계	300시간	150시간	50시간	500시간

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이를 실시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해당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이수과목중 5과목이상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하고, 검정과목중 어느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4할

미만인 불합격자로서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6할이상 득점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원을 양성하는 과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 지정에서 부터 등급 및 이수과정, 이수과정 운영, 등급별 자격,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에서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이 앞으로 있을 계획이다.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원의 등급별 자격, 이수과정, 자격검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표 II-6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원 비교

구 분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원
등급별자격요건	○ 학사학위 취득후 경력3년 이상 ○ 전문대졸업후경력 5년이상 ○ 2급 취득후경력 3년이상	○ 상담관련 분야 전공 박사 ○ 상담관련 분야 석사취득후 경력 4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대졸업후 경력 2년이상 ○ 고졸후 경력 4년 이상 ○ 3급취득후2년이상	○ 상담관련 분야 전공 석사 ○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 3급취득후 2년이상	○ 전문대졸업자 ○ 고졸후 경력2년 이상	○ 상담관련 분야전공 학사취득자 ○ 전문대졸업후 경력2년이상 ○ 비상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경력2년 이상
이수과정	○ 교양특강 16시간 ○ 전공영역 9과목 144시간 ○ 실습영역 없음	○ 8과목 -강의 200시간 -실습 100시간 -세미나 200시간	○ 교양특강 8시간 ○ 전공영역 6과목 96시간 ○ 실습영역 16시간	○ 8과목 -강의 220시간 -실습 140시간 -세미나 140시간	○ 교양특강 4시간 ○ 7과목 총 38시간 ○ 현장실습 8시간	○ 8과목 -강의 300시간 -실습 150시간 -세미나 50시간
	계160시간	계 500시간	계120시간	계 500시간	계 50시간	계500시간
자격검정	○ 필기시험 검정 5과목 ○ 면접시험	○ 필기시험 이수과목중 5과목 ○ 면접시험	○ 필기시험 검정 4과목 ○ 면접시험	○ 필기시험 이수과목중 5과목 ○ 면접시험	○ 필기시험 검정 7과목 (종합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이수과목중 5과목 ○ 면접시험

등급별 자격요건의 비교에서는 청소년상담원은 3급을 제외하고 전공분야를 상담관련분야로 제한을 한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전공학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에서 교과목은 지정교과과목을 강의, 실습, 세미나로 구분하여 이수시간을 제시한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교양영역, 전공영역, 실습영역으로 구분하고 각영역별 과목수와 이수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원 이수시간은 등급별 500시간인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1급이 160시간이상, 2급이 120시간이상, 3급이 50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이수과정의 이수과목중 5과목이상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제시한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구체적으로 등급별 자격검정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1970년 1월 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1983년 5월 법개정시 사회복지사로 개칭되고, 1984년 2월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종사자 총수의 3/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II-7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1급사회복지사	1.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의 교과목중 필수과목은 4과목이상, 선택과목은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자격을 인정한다. 2.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교육법에 의해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1년이상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행정 포함)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소지자로서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2급사회복지사	1.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자. 2.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부전공하여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3.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사회복지사	1.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3.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2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2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5.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이 상으로 3년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는 사회사업학과와 다음 내용에서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말한다.

< 표 II-8 > 사회복지학과 관련학과

구 분	과 목 명
필수과목(10)	사회복지(사업)개론, 사회복지법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보장론,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습
선택과목(4) *각항의 과목 중 1과목이상	1. 사회복지발달사, 사회사업통합방법론 2. 아동 및 가정복지, 산업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사회사업, 부녀복지, 교정복지 3. 사회복지정책, 자원봉사자론, 지도감독론 4.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 사회문제, 정신위생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인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교육과정에는 6주반, 12주반, 24주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고, 훈련대상자 선발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선발한다. 다만, 보건사회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소속기관장이 선발하고, 사회복지행정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훈련기관장이 서류심사 또는 시험전형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훈련과목은 사회복지관련학과 과목과 동일하지만 사회복지실습이 필수과목에 추가되어 필수과목 11과목, 선택과목 4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6주반은 사회복지업무에 8급 상당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중 시·도 및 시·군·구의 부녀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국립정신병원의 의료사회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로 양성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민·관간의 전문적 협조 및 조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30과목 216시간 (소양분야 20시간, 직무분야 189시간, 행정 및 기타 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주반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와 종사자의 질적수준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점차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44과목 445시간(소양분야 42시간, 직무분야 391시간, 행정 및 기타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4주반은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그리고 중학교이하 졸업자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자격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와 종사자의 질적수준,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인력수요에 대처하고자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51개과목 862시간(소양분야 76시간, 직무분야 764시간, 행정 및 기타 2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하며, 199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하고 이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전문대·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사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상급 복지사 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훈련과정 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반면, 청소년지도사의 실무경력도 상급 이수과정의 자격요건 만을 의미함으로 상급 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상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은 무시험인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교육전문요원은 사회교육법에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사회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 등 사회교육활동의 기획·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서 기능에 대하여서는 교육자격증 취득한자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전문요원은 전공과목(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국민교양과목 또는 연수원이 설정하는 과목에 대해 대학 및 전문대학이상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서 해당과목 전공자이거나 해당

과목에 관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면 사회교육 전문요원 연수원의 교수로서 자격과 기능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요원의 자격은 먼저 학력 수준에 따라 대학원 및 대학 수준의 1급전문요원과 전문대학수준의 2급 전문요원으로 구분하고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학과(전공)의 제한이 없지만 사회교육학을 대학원에서는 10학점이상, 대학에서는 20학점이상, 전문대학에서는 40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문요원연수원에서 640시간이상(2급은 2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이 평균 80점이상 되어야 하며,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II-9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1급사회교육전문요원	1. 대학 졸업자로 사회교육학을 20학점이상 취득자. 2. 대학원에서 사회교육학을 10학점이상 취득 졸업자. 3. 대학 졸업자로 전문요원 연수원에서 사회교육학을 480시간이상 이수자. 4. 전문대학 졸업자로 대학 또는 전문요원연수원에서 사회교육학을 4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640시간이상 이수자. 5. 2급 전문요원으로 사회교육 업무 및 초·중등학교원 3년 이상 경력자로서 대학 또는 전문요원연수원에서 사회교육학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160시간이상 이수자. 6. 기타 1호 내지 5호와 동등이상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2급사회교육전문요원	1. 전문대학 졸업자로 사회교육학을 20학점이상 취득자. 2. 고등학교졸업자(동등이상 학력자)로서 사회교육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전문요원 연수원에서 사회교육학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320시간이상 이수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사회교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전문요원 연수원에서 사회교육학을 15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40시간이상 이수한 자. 4. 기타 1호 내지 5호와 동등이상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한자

*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기준의 특징은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한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원들이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자부심과

증지를 갖을 수 있도록 3년이상 교원으로 근무하면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160시간이상 받으면 1급전문요원 자격증을 수여하도록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사항으로 공무원으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 15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240시간이상 받으면 2급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수여하도록하고 있다.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양성은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고, 사회교육법 시행규정에 있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학 영역의 교과목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각 고등교육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 표 II-10 > 사회교육학 영역

구 분	사회교육학 영역 (교과목)	비 고
1. 공동필수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2과목 필수
2. 사회교육학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 사회교육법규, 성인·청소년 지도, 사회교육통계,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1과목이상 필수 선택
3. 사회·심리학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1과목이상 필수선택
4. 직업교육학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산업교육방법론,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인간자원개발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리에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1과목이상 필수선택
5.사회교육실습	교육실습 또는 실무실습	필수과목 (비 학 점 4주 실습)

* 사회교육학의 영역 교과목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이상(또는 32시간이상)으로 하되, 15학점이상 (또는 240시간이상)을 취득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7과목 (사회교육실습은 제외)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교육법에 의하면 사회교육전문요원 양성은 고등교육기관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수기관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하거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사회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1급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연수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사회교육학 과목에 대하여 480시간이상의 교육과 4주간의 실습을 하여야 하고,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사회교육학 과목에 대하여 640시간이상의 교육과 4주간의 실습을 하여야 하고, 2급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초·중등교원 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회교육학 과목 에 대하여 160시간이상의 교육과 4주간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2급사회교육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연수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 또는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회교육학 과목에 대하여 320시간이상의 교육과 4주간의 실습을 하여야하고, 공무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회교육학 과목에 대하여 320시간이상의 교육과 4주간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전문요원 연수기관은 전문요원양성 뿐만 아니라 기존 전문요원의 연수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연수기관에서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이 양성되고 있지 않다.

사회교육법에 제17조 의하면 사회교육전문요원은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한 사회교육법시행령과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표 II-11 >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기준

구 분	내 용
사회교육법 시 행 령	○ 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 - 종사자(단순 노무종사자 제외)가 5인 이상이고, 동시에 50인 이상을 교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사회교육단체나 시설 - 연간 교육인원이 500인 이상인 사회교육단체나 시설 ○ 반드시 1인 이상의 1급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 - 종사자(단순 노무종사자 제외) 5인 이상이고 동시에 100인 이상을 교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사회교육단체나 시설 - 연간 교육인원이 1천인 이상인 사회교육단체나 시설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 법 령	○ 전문학원을 두어야 하는 학원은 3월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 하는 문리계열·기술계열 또는 사무계열 학원 중 다음에 해당되는 학원 - 전임강사가 10인 이상인 학원 - 일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이거나 연간 교습인원이 4천인 이상인 학원

그리고 사회교육전문요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임용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신분의 보장을 받게 되며, 교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 등의 내규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게 되어 있다. 사회교육전문요원은 청소년지도사자격증과 같이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은 없고, 각 등급별 이수 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이상 취득한 후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4) 체육지도자

(1) 경기지도자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한다. 경기지도자는 1급, 2급 경기지도자로 구분하고 있고, 2급 경기지도자는 일반과정, 자격부여, 추가취득으로 구분되며, 경기지도자 연수과정 응시자격과 종목은 다음과 같다.

< 표 II-12 > 경기지도자 연수과정 응시자격 및 종목

자격구분		응 시 자 격	자 격 종 목
1 급 경기지도자		1. 2급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검도, 골프, 궁도, 근대 5종, 농구, 럭 비풋볼, 레슬링, 로 울러스케이팅, 루지, 배구, 배드민턴, 보 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 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 하키, 핸드볼.
	일반 과정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이상의 경기경력이있는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6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자. 5.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자격 부여	1.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성적이 70/100이상인 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전공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 3년이상인 자. 3. 경기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전공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이상인 자.	
	추가 취득	2급 경기지도자 자격소지자.	

1급경기지도자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2급경기지도자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연수생들은 1급경기지도자는 교양과목, 체육일반과목,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590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2급경기지도자도 교양과목, 체육일반과목,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160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등급별 경기지도자 연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자격부여는 서류심사후 구술심사를 포함한 실기심사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추가취득은 실기심사만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 표 II-13 > 경기지도자 연수과목

구 분	1급경기지도자	2급경기지도자
교 양	영어, 체육논문작성법, 컴퓨터	영어, 한국체육사
체육일반	스포츠심리학Ⅱ, 스포츠생리학Ⅱ, 스포츠생체역학Ⅱ, 스포츠사회학Ⅱ, 트레이닝론Ⅱ, 코우칭론Ⅱ, 스포츠의학, 체육통계	스포츠심리학Ⅰ, 스포츠생리학Ⅰ, 스포츠생체역학Ⅰ, 스포츠사회학Ⅰ, 트레이닝론Ⅰ, 코우칭론Ⅰ, 스포츠의학개론, 체력측정평가
전 공	자격종목	자격종목
연수시간	590시간이상	160시간이상

*스포츠의학은 스포츠맛사지, 운동상해 및 구급법, 건강관리, 스포츠영양을 포함한다

경기지도자 자격검정은 교양과목, 체육일반과목 구성되어 있고 1급경기지도자는 9과목(교양 2과목, 체육일반 7과목), 2급경기지도자는 8과목(교양과목 2과목, 체육일반 6과목)으로 실시되며 등급별 경기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II-14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과목

구 분	1급 경기지도자	2급 경기지도자
교 양	영어, 컴퓨터	영어, 한국체육사
체육일반	스포츠심리학Ⅱ, 스포츠생리학Ⅱ, 스포츠생체역학Ⅱ, 스포츠사회학Ⅱ, 트레이닝론Ⅱ, 코우칭론, 스포츠의학	스포츠심리학Ⅰ, 스포츠생리학Ⅰ, 스포츠생체역학Ⅰ, 스포츠사회학Ⅰ, 트레이닝론Ⅰ, 체력측정평가
전 공	논문 또는 현장연구보고서	2급경기지도자 자격종목중 해당 종목의 실기 및 이론

합격자결정은 자격검정의 교양과목 및 체육일반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 전문과목의 이론시험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할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자중 교양과목 및 체육일반과목에 대한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할이상을 득점하였으나 과목중 4할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검정이후 교양과목 및 체육일반과목의 시험에서 4할이상 득점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전공과목의 이론시험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자격검정이후의 시험에서 전공과목의 이론시험 및 실기시험을 각각 면제 받을 수 있다.

(2)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1급, 2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며 2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과정은 자격부여, 특별과정, 일반과정, 추가취득으로 구분되며, 각등급별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응시자격 및 종목은 다음과 같다.

< 표 II-15 >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응시자격 및 종목

자격구분		응 시 자 격	자 격 종 목
1급		1. 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 3년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건강·보건·체육분야에 관한 학사위를 취득하고 병(의)원 및 건강검진 기관의 운동처방분야 2년이상 경력자)	
2급	자격 부여	1. 대학의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성적이 70/100이상인 자.	게이트볼, 골프, 농구, 럭비, 풋볼, 레크리에이션, 로울러스케이팅,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병산,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키,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윈드서핑, 유도, 정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특별 과정	1. 1급경기지도자 자격소지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전공종목의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자.	
	일반 과정	1.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 3년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추가 취득	1. 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3급	자격 부여	1.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성적이 70/100이상인 자.	골프, 보디빌딩, 볼링, 병산, 수영, 스키, 승마, 에어로빅, 요트, 조정, 카누, 테니스, 체육도장종목(검도, 복싱, 레슬링, 우슈, 유도, 태권도)
	특별 과정	1. 2급경기지도자 자격소지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전공종목의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3. 자원봉사지도자로서 해당전공종목의 자원봉사지도 경력 5년이상인 자. 4.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각 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인 자.	
	일반 과정	1. 18세이상인 자.	
	추가 취득	1.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1급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으로, 2급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일반과정, 추가취득은 서류전형, 실기 및 면접으로, 특별과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3급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특별과정, 일반과정, 추가취득 모두 서류전형, 실기 및 면접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은 교양과목, 체육일반, 전공과목으로 구분되어지며, 1급생활체육지도자는

13과목 2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2급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은 10과목 160시간, 특별과정은 10과목 60시간을 이수하여야하며, 3급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은 8과목 60시간을 이수하여야하며, 각 등급별 연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 II-16 >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목

구 분	1급	2급	3급
교 양	생활체육론 사회복지론	생활체육론 사회복지론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체육일반	생활체육정책론 운동생리학 스포츠카운셀링 생활체육프로그램 성론 생체역학 운동처방론 스포츠 의학 운동영양학	생활체육지도론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검사론 운동역학 트레이닝방법론 레크리에이션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방법론 구급및안전관리
전 공		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중 2종목이 상에 해당하는 과목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중 1종목 에 해당하는 과목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연수과목에서 전공과목을 제외한 교양과목과 체육 일반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결정은 경기지도자와 같다.

체육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를 비교해 보면 체육지도자는 연수과정 전형방법에서 1급경기지도자와 1급생활체육지도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하고 2급, 3급경기지도자와 2급, 3급생활체육지도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선발하는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서류심사만으로 연수생을 선발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과정은 일반과정, 특별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되는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일반과정만이 운영되고 있다.

3. 외국 청소년지도자

1) 영국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현황

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을 일반적인 의미로 ‘청소년지도자’로 부르고 있지만 중점적인 활동과 역할에 따라 다양하다.

(2) 지도자 양성체제

청소년지도자가 되는 경로는 크게 상근지도자와 비상근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다.

○ 상근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취득과정(initial training course in youth and community work)

상근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은 다양하며 그 명칭도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youth and community worker), 지역사회지도자(communitary worker), 그리고 youth leader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청소년지도자의 대부분은 유급 또는 자원의 시간제 비상근지도자(part-time worker)들이다.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 ‘청소년과 지역사회연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은 청소년지도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국립청소년국(NYA : National Youth Agency)에서 인증(endorsement)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를 위한 2년간의 전일제(full-time):
연구과정으로 자격취득 (NYA의 인증필요)
- ②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를 위한 3년간의 시간제(part-time):
학사학위과정으로 자격취득 (NYA의 인증필요)
- ③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를 위한 1년간 전일제 또는 2년간 시간제:
대학원과정(학위과정, 연구과정, 인증과정)으로 자격취득
(NYA의 인증필요)
- ④ 청소년과 지역사회에서의 학위취득과정(degree):

대학원과정(학위과정, 연구과정, 인증과정)으로 자격취득(NYA의 인증필요)

⑤ 견습계획(apprenticeship schemes):

경력인정에 대한 자격 취득 (NYA의 인증필요)

⑥ 경력인정제(validating learning from experience):

경험,지식과 이해정도, 기능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에서 자격을 부여 (NYA의 인증필요)

⑦ 관련학위과정의 인정 : NYA의 인증 불필요

⑧ 교사자격증의 인정 : NYA의 인증 불필요

각각의 경우에 연수과정은 인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NYA의 ‘교육과 연수표준소위원회(Education and Training Stabdards Subcommitte)’의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학위(degree), 수료자격(diploma), 인증자격(certificate) 등 어떠한 형태의 자격이 주어지든지 직업적인 지위는 같다.

NYA의 이수시간은 6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통하여 수준 높은 과정을 개발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인증을 받는 과정들은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에서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을 포함하기 위해서 JNC(Joint Negotiating Committee)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수용된다. 소위원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과정은 이수해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과정이 된다.

○ 비상근지도자(part-time worker)

청소년지도자의 대부분은 유급의 또는 자원으로 일하는 비상근지도자들이다. 어떤 경우는 상근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연수를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활동과 청소년활동을 겸하고 있다.

많은 비상근지도자들은 자신의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단체 가입이나 지역사회 집단의 회원으로서 비상근청소년지도자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비상근지도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활동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대개는 교육부서)와 접촉해야만 한다. 지방의 자원 청소년집단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자원청소년활동을 위한 위원회’는 이러한 기회에 있어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연수는 비상근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효과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

신감을 얻도록 돕는다. 비상근지도자들은 대개 기본적인 입문과정을 거치고 청소년활동의 특정한 측면에서 현직연수과정을 통하여 보충받을 수 있다. 점차로 연수과정들은 참가자들의 기능과 경험위에서 과정을 개설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까지 비상근지도자를 위한 연수는 단체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과정으로 되어있었지만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연수과정의 인증이라는 새로운 체제는 이러한 연수과정들이 국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영국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의 특징은 상근청소년지도자와 비상근지도자로 구분되며, 상근청소년지도자의 특징은 자격요건을 갖추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국립청소년국(NYA)에서 인정을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비상근지도자는 자신의 서비스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단체 가입, 지역사회집단 회원 또는 자원청소년활동을 위한 위원회를 통해서 비상근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연수가 단체나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 프랑스의 청소년지도자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이해하려면, 애니메이션(Animation)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이란 사회교육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생활에 혼을 불어 넣는다는 의미로서 현대 기계문명에 의해 손상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실천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써 바로 Animateur로 불리우는 청소년지도자들이다. Animateur 자격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자격증은 관련직업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의미하므로 그들을 필요로하는 시설과 단체에 의해 Animateur의 기술적 능력이나 전문능력에 따라 우선적으로 충원된다. 따라서 Animateur는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격으로 청소년 체육부의 도관할 기관(장)에 의해 교부되며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단체의 '관리자'들의 자격은 도단위 관청 소속의 심사위원들의 제안에 의해 지방관청장들에 의해 교부된다.

(1) 자격(Animateur 자격)

○ B.A.S.E 자격(사회교육 애니메이션 자격)

이 자격은 1970년 청소년체육부 정무차관실에 의해 개설되었다. 이 자격은 성인 또는 청소년단체의 전문 Animateur들이나 자원봉사 Animateur들에게 각 도위원회의 사회교육과에 의해 교부된다. 이 자격은 18세이상의 연령조건 및 2년이상의 활동경험이 요구 된다.

○ B.E.A.T.E.P. 자격(대중교육 기술 애니메이션 자격)

이 자격은 1986년 애니메이션의 전문적 훈련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자격수준은 B.A.S.E 보다 상위수준이다. 이 자격을 위한 조건은 첫째, 18세이상의 연령조건 둘째, 다음의 자격증 BEP(1986), BEP(1985), BASE,BEES(체육교사 국가자격)중 한 가지를 소유할 것 셋째, 애니메이션 분야나 선택된 전문분야에서 2년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을 넷째, 기술시험과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격의 연수과정은 최대 3년동안에 총 650시간(일반연수 : 120시간,기술연수 : 160시간, 교육학 연수 : 160시간, 실기실습 : 210시간)이며, 연수후에 치르는 일반 연수에 관한 필기시험, 기술시험 및 교육학 자격시험이 끝난 다음 자격증이 부여 된다.

이 자격은 세 가지 활동, 즉 과학기술활동, 문화표현활동, 사회활동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자격증은 고용자들에게 Animateur들의 전문능력을 보장해주며 공식적인 인정을 주게 된다.

○ D.E.F.A(관리책임자 자격)

이 자격은 197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자격은 가장 상위의 자격으로 Animateur들에게 단체를 활성화시키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적 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자격을 위한 조건은 3년이상의 전문적 활동경험, 스포츠, 대중교육 또는 사회교육 관련기관에서 애니메이션활동 3년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B.A.S.E 자격이나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자격의 연수과정은 5개과정으로 총 800시간이상을 (애니메이션의 사회환경 : 180시간이상, 교육학 · 행정 · 조직 : 180시간이상, 교육학 · 인간관계 : 180시간이상, 애니메이션기술 : 180시간이상, 선택연수 : 18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3종류의 자격이외에도 책임자 자격인 B.A.F.D(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e directeur)와 지도자(Animateur) 자격인 B.A.F.A(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 등의 자격이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현대 기계문명에 의해 손상된 인간성 회복에 기본바탕을 두고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양성체계는 B.A.S.E (사회교육 애니메이션 자격), B.E.A.T.E.P. (대중교육 기술 애니메이션 자격), D.E.F.A(관리책임자 자격) 등이 있다. 이 자격들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직업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의미하므로 그들을 필요로하는 시설과 단체에 의해 Animateur의 기술적 능력이나 전문능력에 따라 우선적으로 충원되는 것이 프랑스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체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자격과 종류

청소년활동의 성패는 지도자에 달려 있고, 특히 야외활동의 경우 지도자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전달하여 많은 과업을 달성하고 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산출해 낼 것이 기대된다. 청소년지도자를 선발·고용·훈련·지도 감독하는 것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청소년활동지도자에게는 성숙과 판단의 두가지 자질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는 객관적인 측정은 할 수 없지만 대체로 교육수준과 인정 가능한 경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한다. 유자격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단일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의 종류와 유형은 조직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체 내에서도 다르고 단체의 종류별로도 다양하다. 요구되는 전문성(professionalism)의 기준, 단체내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기회들,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형태로든 각종 청소년기관·단체는 그들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주력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유급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전국적 조직을 가진 경우 관련 직원들을 채용하는 기준

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지도자의 하나로써 야외활동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지도·감독에 직접 종사하는 활동지도자의 경우 운영관리요원, 프로그램요원, 상담-지도요원으로 크게 구분된다. 운영관리요원(Administrative Personnel)은 청소년활동의 지도감독과 행정책임을 맡고 있고 캠프감독자(Camp director), 보조감독자(assistant director), 사업관리자(business manager), 식품서비스감독자(food service director), 건강지도감독자(health supervisor)가 있다. 캠프감독자는 야외활동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직원의 채용과 관리, 활동장 관리 등을 맡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 참가자들의 지도 및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요원은 프로그램의 계획과 전개 및 활동 참가 청소년에 대한 지도 감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위과정 지도감독자(unit supervisor), 활동전문가(activity specialists), 활동조정가(activity coordinator) 및 상담원(counselors)등이 있다. 단위과정 지도감독자는 성별, 연령별, 기간별 각 활동과정의 운용 책임자이며 활동전문가는 각 단위 프로그램 활동지도의 전문가로서 테니스코치, 수영강사, 무용강사, 컴퓨터강사 등이 이에 속한다. 활동조정가는 각 단위 활동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각 활동의 시간, 장소, 순서, 전문가 배치, 참가자의 활동 참가 조정 및 활동시행 계획을 수립·조정한다. 상담-지도 요원(Counselor)은 장애자와 같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하는 신체적, 의학적, 행동적인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도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활동을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보조지도자’나 ‘자원봉사자’로 불린다. 보수는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활동참가자의 50%이상이 특정요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미국의 청소년기관·단체는 직원과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주로 전국 주요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캠퍼스에서 있는 청소년기관 행정에 관한 경력 중심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지도력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중에는 청소년 연구,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교육, 청소년기관 행정 및 그 밖의 영역에서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곳도 있으며 The United Way of America는 Kellogg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자

와 유급직원을 위한 지방의 현직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곳도 있다.

청소년 야외활동지도자의 경우 미국야영협회의 전문검정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데 주로 캠핑철학,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정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 전문자격 프로그램은 5개의 종류가 있는데 1) 주간 캠프 공인운영자(Certified Day Camp Director) 2) 숙박 캠프 공인운영자(Certified Resident Camp Director) 3) 공인 회의운영자(Certified Conference Director) 4) 공인 프로그램 지도자(Certified Program Supervisor) 5) 공인 부지관리자(Certified Site Manager) 등이 선택가능하다. 이들 각 과정은 연령, 교육, 전문경력, 승인, 캠프인가 표준, 윤리강령, 전문지식 및 직업경력, 특별기관 또는 과정이수 등에 있어 각기 다른 최소의 필요조건이 있다. 한 예로 캠프운영자가 협회에 의해 공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교육, 경력, 전문경험을 갖추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인운영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운영자 코스는 캠프운영자 자격점정을 위한 것으로 점정과정의 최고수준이다. 과정은 단체생활을 통하여 아이디어와 정보교환을 하고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캠프조직과 직원 및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최소기준은 학사학위 소유 과거 2년 안에 현장훈련 유경험, 운영자가 되기 전 최소 16주간의 캠프행정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협회의 전국자격위원회로부터 공인캠프 운영자(Certified Camp Director) 자격을 받게 된다.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노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소년 회원에게 프로그램을 전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의 거의 전부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집단, 클럽, 분단(troops) 및 팀의 지도자, 코치, 조언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지도력의 충원, 훈련 및 지속적 지원은 청소년관련 기관과 단체의 사업에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며 이러한 전통적인 자원봉사자 기반이 여성들의 취업증가로 허물어지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들은 자원봉사를 그만두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과 관련있는 분야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들은 학생, 미혼남녀, 자녀 없는 부부 및 은퇴자

들고 접촉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 집단에서 일반적인 동료 지도력(peer leadership)도 또한 도입되고 있다. 단체들은 자원봉사자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기술에 과업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그 본분을 다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한 훈련 과정을 학술 경력으로 인정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력을 공식적인 이력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유발요인(incentive)을 제공한다.

즉, 미국 청소년활동지도자는 성숙과 판단의 자질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청소년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주요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캠퍼스에서 청소년기관행정에 관한 경력중심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지도력을 개발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와 유급직원을 위한 지방의 현직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 프로그램이 있으며 청소년 야외활동지도자의 경우 미국야영협회의 5개의 전문점정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미국청소년 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세분화·전문화 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4) 독일 청소년활동 지도자

독일의 청소년 전임지도자의 종류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 여성 청소년지도원, 교육사, 보육사 등 다양하여 그 활동영역은 청소년단체,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교육과 관련되어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전임지도자는 국가검정 필요성 유무와 급수를 기준으로 각기 두개의 하위그룹으로 구분된다.

< 표 II-15 > 독일의 청소년 전임지도자의 종류

구 분	국 가 검 정	급	수
사회교육가(Sozialpädagoge)	필 요	상	급
사회사업가(Sozialarbeiter)	필 요	상	급
여성 청소년지도원(Jugendleiterin)	불 필 요	상	급
교육사(Erzieher)	필 요	하	급
보육사(Kindergarten)	불 필 요	하	급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은 먼저 사회교육가는 실과학교(Realschule) 졸업 또는 동등학력과 2년 이상의 직업경력을 가진 18세 이상의 자로서 고등전문학교(6학기)에서 수학한 후 실습(1년)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여성 청소년지도원은 교육사나 보육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23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고등전문학교 4학기의 수학경력이 요구된다. 교육사와 보육사는 실과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을 구비하고 1년 이상 관련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17, 8세의 자로서 전문학교 수학(4학기)과 1년의 실습을 거쳐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의 청소년지도자로서는 청소년지도원(Jugendpflieger)이 있다. 청소년지도원은 특별한 자격이라기 보다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교육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서 청소년 지도과정을 이수한 사회사업가나 국민학교 교사 중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지도자들은 수시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체에서 주관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1년 정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것,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교육내용도 단순한 정보교환에서부터 전문적인 특수지도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전임지도자 외에도 청소년지도 자원봉사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지방자치체를 위하여 각종 공공기관이나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교육방법은 주관단체나 기관의 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는 지방자치체 또는 연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자격증을 교부해 준다.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각종 청소년지도 활동시 자치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지도 활동을 위해 통상의 유급휴가 외에도 매년 일정한 기간(12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즉, 독일의 청소년전임지도자의 종류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 여성청소년지도원 등이고 그 활동영역은 청소년단체,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교육과 관련되어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또는 청소년 지도과정을 이수한 사회사업가나 국민학교 교사 중 청소년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지도원(Jugendpfleger)은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부분의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일본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종류와 유형

○ 전문적인 행정직원

우선 행정직원에도 사회교육주사, 공민관주사, 청년의 집·소년자연의 집·스포츠시설 등의 전문직원, 아동복지사, 사회복지사주사, 직업훈련지도원, 농업개량보급원, 소년보호관 등의 여러가지 지도자들이 청소년관계 업무를 맡아하고 있다.

사회교육주사는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으로 전문적, 기술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아 도도부현, 시 및 인구 1만명이상의 정촌(町村)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농림수산업 관계자중에서 임업관계지도자는 임업농에게 임업경영, 기술 등을 지도하면서 산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도한다. 어업관계지도자는 수산업개량보급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어업후계자인 어촌 청소년을 육성·지도한다.

○ 청소년 건전육성 시설 등에 근무하는 전문직원 등

청소년관계 시설의 직원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지도·조언해 주는데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직원은 전문직원, 국립청년의 집 전문직원, 공립청년의 집 지도직원, 국립소년자연의 집, 공민관 주사, 도서관 사서, 학예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청소년 홈 지도원은 노동성이 매년 실시하는 '근로청소년 홈 지도원 자격강습'의 수강자들 중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역할은 근로청소년들의 레크레이션, 그

를활동의 지도, 생활 및 직업상담 등을 한다. 아동후생원은 아동관, 아동유원 등 아동후생시설에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서 집단적 또는 개별적 지도를 하는 직원이다.

○ 기업 등의 유급지도자

기업 등의 유급지도자로는 근로청소년복지추진자와 근로청소년복지원이 있다.

○ 행정기관 등이 위촉한 지도자

행정기관 등이 위촉한 지도자에는 아동위원, 가정상담원, 사회교육위원, 사회교육지도원, 체육지도위원, 직업상담원, 소년보도원, 청소년상담원, 보호사 등이 있다.

아동위원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해 원조·지도를 하며 사회복지주사와 아동복지사가 하는 일에 협력한다. 후생성은 도도부현, 시정촌이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서 아동위원의 연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가정상담원은 복지사무소에 설치된 가정아동상담실에 배치되어 아동의 가정양육에 관한 문제 등의 상담에 응한다.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성과 지방공공단체에서 매년 연수회를 개최한다.

사회교육지도원은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위촉을 해서 사회교육 특정분야에서 직접지도, 학습상담을 한다. 체육지도위원은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근 직원으로 체육스포츠 진흥사업의 기획·입안·추진하는데 기술적 지도를 하며 문부성은 이들 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회를 실시한다.

○ 민간의 유지지도자(자원봉사자)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지도원과 추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시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활동을 하므로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의 지역 확산에 큰 공헌을 했다. 추진지도원은 지사 또는 청소년육성 현민회의 회장이 위촉을 하며 각 시정촌에 한 사람이상 배치되어 지역주민과 청소년단체의 지도·상담·연락을 담당한다. 추진원은 시정촌장 또는 청소년육성 시정촌민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각 시정촌의 말단지역에서 청소년지도·상담을 한다.

(2)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일본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호칭과 종류로 구분되고 있지만 역할과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는 기능상 유사하다. 이들은 대체로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와 실제적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청소년활동을 지도 감독하거나 청소년사업을 후원 창조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첫째의 경우는 환경이나 조건의 정비, 연락, 조정, 지도자양성, 예산정비, 배분, 사업의 기획, 집행 등을 맡아하는 사회교육주사, 사회복지주사, 그 밖에 지도관계 행정직원이나 민간단체의 임직원, 행정관계직원, 시설직원 등 관리는영부문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은 또한 단체의 조직화, 연대 강화 등을 도모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전문적인 지도자의 경우, 단체의 리더, 사회교육주사, 청소년육성운동추진원 등 주로 단체활동에 대한 감독·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특기를 갖고 강의, 조언, 프로그램 작성, 원조, 스포츠·레크레이션 지도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상담, 진단, 보도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식·경험자, 각종시설 지도직원, 농업개량보급원과 아동복지사, 청소년상담원, 소년보도위원등이 속한다. 복지, 보호관찰 등의 역할을 하는 아동지도원, 보호사 등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셋째, 각종 활동의 협력, 원조, 후원 등을 맡아하거나 단체의 유지, 발전 등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민간독지가, 자원봉사자, 사회교육지도원, 청소년지도원 및 단체의 상근·비상근 지도 임직원, 리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청소년지도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오늘날 지도자의 절대수 부족, 지도상 전문성의 결여, 지도자 양성 연수의 미흡, 지도자의 처우나 사회평가의 문제, 각종 지도자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청소년단체의 활동지도에 있어서는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청소년단체에 있어서의 지도자와 청소년 사이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란 청소년의 감정과 욕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청소년단체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하는 공감·신뢰관계에 의해서 청소년의 성장과 정까지도 고려하는 성숙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의 청소년지도자의 종류는 전문적 행정직원, 청소년 건전육성 시설 등에 근무하는 전문직원,기업 등의 유급지도자, 행정기관 등이 위촉한 지도자, 민간의 유지도자(자원봉사자) 등이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크게 청소년단체·시설을 관리·운영, 청소년활동 감독·지도, 청소년사업 후원·찬조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단체활동의 의의와 역할, 청소년단체의 조직·재무 및 청소년단체의 학습활동의 기획·전개 그리고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토의·실습 등의 방법으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Ⅲ.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운영

1996년 12월 현재 배출된 지도사 수는 2,477명이며 지원자는 5,780명에 이르고 있어 평균 2.3 : 1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에 지원하여 선발된 연수생들은 99% 이상이 이수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총 2,739명이 자격검정에 응시('92년도 특별과정 포함)하여 2,477명이 합격 90.5%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93년 713명, '94년 708명, '95년 715명, '96년 341명이 배출되었는데 '96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50% 수준의 인원을 배출 하였다.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질적향상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되며 연수생들의 치열한 경쟁률을 실감케 하였다.

자격검정에 응시한 연수생들이 현재까지는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수생 배출현황은 < 표 III-1 >과 같다.

청소년지도사의 배출은 활동분야별 현장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 실무연수과정을 신설하여 경험과 실기가 부족한 신규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이수과정을 실시토록 한다거나 청소년활동분야, 청소년육성관련 행정분야, 학교교육분야 청소년 종교, 교육분야 등의 청소년 관련 부문별로 연수생을 선발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영역을 연수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교사들은, 향후 학교에서의 수련활동 강화 방침으로 인해 양질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어야 하므로 이수과정기간을 방학기간중 별도의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종교기관의 청소년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성직자들에 대한 전문이수과정 기회도 요청된다.

< 표 Ⅲ-1> 연수생 배출 현황

(단위 : 명)

년	도	선 발 현 황			연 수 현 황		자 격 취 득 현 황				비 고
		지원자	불합격자	선발자	탈락자	수료자	접 수	응시자	탈락자	합격자	
92	2 급 특별과정	485	85	400	48	352	-	-	-	-	
	소 계	485	85	400	48	352	-	-	-	-	'93년 검정
93	2 급	420	220	200	1	199	505	497	12	485	특별과 정포함
	3 급	594	354	240	0	240	239	236	8	228	
	소 계	1,014	574	440	1	439	744	733	20	713	
94	1 급	259	159	100	1	99	99	99	3	96	
	2 급	675	275	400	10	390	395	386	11	375	
	3 급	313	27	286	17	269	269	245	8	237	
	소 계	1,247	461	786	28	758	763	730	22	708	
95	1 급	228	128	100	0	100	104	104	3	101	
	2 급	876	471	405	1	404	433	412	51	361	
	3 급	582	282	300	0	300	305	281	28	253	
	소 계	1,686	881	805	1	804	842	797	82	715	
96	1 급	295	245	50	2	48	52	51	4	47	
	2 급	865	715	150	2	148	213	199	6	193	
	3 급	527	427	100	0	100	125	114	13	101	
	추 가 1 급	48	10	38	0	38	-	-	-	-	
	추 가 2 급	75	18	57	1	56	-	-	-	-	
	소 계	1,810	1,415	395	5	390	390	364	23	341	
총 계	1 급	830	542	288	3	285	255	254	10	244	
	2 급	3,396	1,784	1,612	63	1,549	1,546	1,494	80	1,414	
	3 급	2,016	1,090	926	17	909	938	876	57	819	
	합 계	6,242	3,416	2,826	83	2,743	2,739	2,624	147	2,477	

상기 도표에 의한 분석으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선발은 '96년도 연수인원을 감소하여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원자의 50%에 이르는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원자와 선발자의 수가 큰 차이가 없음을 단면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지도사 자격중에 지원하는 인원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통계 수치에 의하면 '93년도 1,014명, '94년도 1,240명, '95년도 1,716명, '96년도 1,810명으로 지원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학교, 종교계, 개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95% 이상 합격하는 것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가치가 저하되는 현상이다.

청소년지도사의 개념을 정확히 규명·정립하고 지도사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하여 적정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가 많거나 적을 경우 희소성이나 과다 남발의 문제가 발생되며, 지도사 개개인의 품위에도 손상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적인 교육을 감안한다면 50명 단위의 1개반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위해서는 분야별 특별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의 높은 합격률만 본다면 연수와 지도사 배출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연수의 질은 낮아지고 자격증의 희소성 및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막을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격률을 조정하여 6~7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격검정 응시생들의 면접등에서 개인적 품성을 고려하거나, 현재 및 미래의 지도자적 자질과의향을 반영하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연수생 선발 및 경력인정

1) 등록요건

(1) 현 황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2급·3급으로 구분하며 등록요건(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III-2 >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등록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1급청소년지도사 과 정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급청소년지도사 과 정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4년이상인 자. 4.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교원(2급정교사 이상), 사회복지사(2급이상), 사회교육전문 요원(1급), 생활체육지도자(2급이상), 청소년상담원(3급이상)의 자격소지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급청소년지도사 과 정	1.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문 제 점

- ①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등록요건의 각 등급별 첫째항을 보면 학교의 졸업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 또는 종사경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각 등급간의 차별성이 없으며 상위 등급의 전환이 경력만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 ② 현재까지의 등록시 제출서류의 내용을 보면 등록신청서(소정양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소정양식), 사진, 자격증 사본으로 공고 하였다. 경력증명의 양식에서 소정양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1개기관의 경력만을 증명하거나 타 기관의 경력까지도 포함하여 한 개의 증명서로 대체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사본에는 해당 자격증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정확하게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분류되지 않아 개개인의 자격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서류심사의 번거러움을 초래하고 있다.
- ③ 연수 지원자의 접수 및 선발과정에서 분석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작업으로 수행하여 많은 시간과 공력이 허비된다. 또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시 부적격자의 지원 비율이 높다.('96년도 기준 : 총지원자 631명중 1급 103명, 2급 31명, 총 144명의 부적격자가 발생)

(3) 개선방안

- ① 등록요건의 1순위가 학력이나 경력 조항이었던 것을 순차적 자격취득 방법으로 변경한다. 즉, 하위등급을 취득한 후에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고 상위등급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현재까지 사용되어온 소정의 양식중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각 경력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이나 중앙단위 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격증은 교사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청소년상담원 자격증, 테크리에이션 자격증만을 첨부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출서류에 기관의 직인이 사용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 ④ 일련의 선발업무를 전산화로 처리하여 지원자 및 자격검정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서류전형시의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공고 및 선발 안내문 발송시 접수내용이 미비한 경우 접수 불허를 고지 하도록 한다.

2) 선발기준

(1) 현 황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등록신청자중 선발기준(청소년지도사 양성 연수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95년 선발기준에 의하여 경력, 직업, 학력 순으로 선발한 결과 1급 연수생중 교사들의 합격률이 51%에 이르러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지도자들의 연수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96년 직업, 경력, 학력 순으로 선발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관련 지도자들이 연수에 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대상자 '96년도 선발기준은 <표 III-3>과 같다.

< 표 III-3 > 청소년지도사 선발기준

구 분	우선순위		선 발 기 준	비 고
	순위	점수		
직 업	1	7	○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한 현직(상근)지도자	* 현재 종사하는 직업
	2	5	○ 청소년육성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3	3	○ 학교 일반교사	
	4	2	○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자격취 득자로서 현직에 종사하는 자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생활체육 지도사)	
	5	1	○ 청소년지도위원, 선도위원, 보호 관찰위원, 아동복지위원 등으로 서 청소년육성활동에 종사하는자 및 자원봉사활동 경력	
경 력	1	6	10년 이상	*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 종사 경력 100% 인정 * 현직공무원 및 청소년 단체지도교사경력은 70% 인정 * 자원봉사자 경력은 50% 인정(단, 관련법률이인정 한단체의 경력이어야함)
	2	5	8년 - 10년 미만	
	3	4	6년 - 8년 미만	
	4	3	4년 - 6년 미만	
	5	2	2년 - 4년 미만	
	6	1	2년 미만	
학 력	1	4	대학원이상 졸업자	
	2	3	4년제 대학졸업자	
	3	2	2년제 대학졸업자	
	4	1	고등학교 졸업자	

※ 위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종합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하되 동점일 경우 직업, 경력, 학력순으로 선발한다. 단, 기능소지자(테크리에이션 자격자 등)는 동점일 경우 최우선 선발한다.

※ 경력 인정범위는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직업 인정범위

- 청소년상담실 직원중 : 단체 파견상담원 : 7점
기타 파견상담원 : 5점(공무원에 준함)
- 관련자격 소지자 자격과 관련된 해당업무 종사 : 2점
- 미등록 시설이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인정(개인시설은 불인정)
- 교육청장 위촉에 의한 학교상담원은 인정 : 1점
- 임시교사는 현직교사와 동일하게 인정 : 3점 (시간강사는 불인정)

② 경력 인정범위

규정외 사항에 대한 기준 설정

- 불법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및 시설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서의 경력은 불인정.
 - 단체 및 시설의 자원봉사자 경력은 50%만 인정.
 - 교 사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는 증명서 첨부시에만 70%인정
일반교사 경력은 불인정.
 - 공무원 : 청소년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만 인정.
(예 : 시·도 청소년과, 보호관찰소)
 - 교육행정직은 불인정
- ※ 경력인정 시기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③ 학력 인정범위

- 교원양성소 수료자는 전문대졸로 인정.
- 정규대학 및 방송통신대 2년이상 수료시 전문대졸로 인정.

④ 동점자처리 우선순위

규정에 의한 동점자 처리(직업, 경력, 학력)후에도 동점자 발생시엔 자격증 다수, 연장자순 적용.

(2) 문제점

- ① 각 등급별 선발기준의 일괄 적용으로 등급별 양성목적에 따른 적격자의 선발이 곤란하다.
- ②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은 각 행정기관(문화체육부, 교육부 등)에 시설, 단체가 등록된 일자를 기준으로하여 경력이 인정되므로써 지도자들의 경력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 ③ 작성된 지원서류에 근무처나 소속기관이 정확하지 않아 경력인정 혼란의 여지가 있고 경력기간과 경력증명의 확인이 어렵다.
- ④ 각급 대학에서의 청소년관련학과 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경험이 전무한 지도사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현장지도 실기능력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된다.
- 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등록요건 조항중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을 판정하는 조항이 있다. 이는 각종 수련시설이나 청소년단체, 국가기관(자치단체) 또는 청소년관련기관 등의 공식화된 기관일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나 일반 공무원, 일반교사, 종교단체, 사설기관 등은 등록요건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련분야에 근무하지 않거나 자원봉사 또는 일용직일 경우 등록요건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3) 개선방안

- ①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선발기준의 강화
양성목적에 따른 선발기준을 재조정하고 경력 및 현직 평가점수를 차등화하여 청소년육성 관련 종사자에게 이수과정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즉, 1급은 경력과 현직 점수를 세분화하고, 1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2, 3급 연수생은 학력과 현직점수를 세분화한 순위에 의해 선발 되도록 보완한다.

< 표 III-4 > 선발기준의 예

구 분	우선순위		선 발 기 준
	순위	점수	
직 업	1	7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한 현직(상근)지도자
	2	5	청소년육성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3	3	학교 일반교사 및 일반 공무원
	4	2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자격취득자로서 현직에 종사하는 자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생활체육 지도사 등)
	5	1	청소년지도위원, 선도위원, 보호관찰위원, 아동복지위원 등 으로서 청소년육성활동에 종사하는자 및 자원봉사활동
경 력			년수 $\times$ 1/2 (단, 현재 직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상의 점수는 7점으로 제한함 : 예, 4년 6개월 = 2.3점)
학 력	1	4	대학원이상 졸업자
	2	3	4년제 대학졸업자
	3	2	2년제 대학졸업자
	4	1	고등학교 졸업자

※ 직업인정은 현재종사하는 직업으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 경력인정 %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인정)

< 표 III-5 > 경력 인정 % 예

종 사 경 력	인정 %	비 고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 종사 경력	100 %	
청소년관련 공무원 및 청소년단체 지도교사경력	80 %	
일반교사 및 일반공무원 경력	50 %	
자원봉사 및 청소년관련시설 일용직 경력 (단, 관련법률이 인정한 단체의 경력이어야 함)	30 %	

※ 학력인정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재학자는 이전 학력의 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규대학 및 방송통신대 2년이상 수료시 재학증명
서를 제출하면 전문대졸로 인정)

② 경력인정 범위의 재조정

등록신청서에 개인의 경력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며, 기록된 경력의
소속기관 직인이나 중앙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게 한다.

2. 연수운영

1) 참여동기 및 목적

(1) 현 황

이수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설문조사<표 III-6>에서도 나타나듯이 연수생들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수과정 기간중에 무엇인가 배우려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바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음에도 이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수생들은 갖가지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 또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하나 선발되고 나서도 담당업무의 대체요원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상사의 이해부족 등으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에 참가하는데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참가하더라도 업무의 공백 및 시간의 활용 등으로 적지않은 부담감을 감수하고 이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통하여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연수생들이 판단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지가 큰 작용을 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돌출되고 있으나 가장 많은 공통적 사항은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사명감 고취,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지식 습득, 많은 지도자와의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폭을 넓혔다고 평가<표 III-8>하고 있다

다음의 표들은 '92년부터 '96년까지의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내용이다. 여기에서는 통계치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숫자상에 나타나는 연수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표 III-6 > 청소년지도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

(단위 : %)

년 도		지도사로서 필요지식습득	인적교류 및 정보획득	관리자로서 필요	자격증 취득	상급자의지시	기 타
93	2 급	59.8	2.2	0	26.1	6.5	5.4
	소계	59.8	2.2	0	26.1	6.5	5.4
94	1 급	79.2	1.4	0	16.7	1.4	1.3
	2 급	61.8	2.9	0	22.5	8.1	4.7
	소계	70.5	2.2	0	19.6	4.6	3.1
95	1 급	51.1	14.9	19.1	13.8	1.1	0
	2 급	69.7	3.5	1.5	5.6	19.7	0
	소계	60.4	9.2	10.3	9.7	10.4	0
96	1 급	72.1	0	0	20.9	4.7	2.3
	2 급	77.3	0	0	20.5	2.3	0
	소계	74.7	0	0	20.7	3.4	1.2
총 계		66.4	3.4	2.6	19.0	6.2	2.4

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에 참여한 동기는 필요지식의 습득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가지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참가하는 연수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 표 III-7 >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

(단위 : %)

년 도		경제적 비용	직장상사 이해부족	담당업무 대체요원 부족	연수에 관한 정보획득의 어려움	기 타
93	2 급	5.4	16.3	33.7	30.4	14.2
	소계	5.4	16.3	33.7	30.4	14.2
94	1 급	18.1	12.5	43.1	16.7	9.7
	2 급	25.4	10.4	29.5	16.8	17.9
	소계	21.6	11.5	36.3	16.8	13.8
95	1 급	13.8	26.6	45.7	5.3	8.6
	2 급	23.8	26.0	32.3	5.3	12.6
	소계	18.8	26.3	39.0	5.3	10.6
96	1 급	14.0	14.0	53.3	11.6	7.1
	2 급	27.3	15.9	31.8	13.6	11.4
	소계	20.7	14.9	42.5	12.6	9.3
총 계		16.6	17.3	37.9	16.3	11.9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에 참가하기 어려운점을 나열하기란 쉽지 않다. 자료에 의하면 대체요원의 부족으로 참가하기 어렵다는 통계가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 및 기타 다른 요인도 상당수가 있다.

< 표 III-8 > 연수를 통하여 도움이 되었던 부분

구 분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의욕 고취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지식 습득	활동자료의 습득	많은 지도자와의 인간관계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	기 타
93	2 급	27.2	20.7	1.1	17.9	25.5	7.6
	소계	27.2	20.7	1.1	17.9	25.5	7.6
94	1 급	18.1	41.7	2.8	20.8	16.6	0
	2 급	12.1	43.4	9.8	9.8	24.9	0
	소계	15.1	42.6	6.3	15.3	20.7	0
95	1 급	20.2	21.3	4.3	38.3	11.7	4.2
	2 급	20.2	18.6	5.9	32.4	20.7	2.2
	소계	20.2	19.9	5.1	35.4	16.2	3.2
96	1 급	18.6	30.2	0	44.2	7.0	0
	2 급	22.7	20.5	4.5	31.8	20.5	0
	소계	20.7	25.4	2.2	38.0	13.7	0
총 계		20.8	27.2	3.7	26.6	19.0	2.7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에 어떠한 자세로 참가하느냐 하는 것이 자료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진행측의 의도와 연수생 스스로의 의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문 제 점

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에 참여한 인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현직에서의 필요나 취직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인하여 시간때우기를 한다거나 격식에 의한 형식적인 연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②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위해서는 근무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적 고충을 뒤로한채 참가하여야 한다. 연수운영의 시기도 문제이겠지만 자신의 대체 업무를 수행 할 요원이 마땅치 않아 업무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여 참가를 포기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① 자격증 취득이 취업이나 개인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단일목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생 스스로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② 이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연수생들이 공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다. 또한 업무에 공백을 사전에 채울수 있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이수과정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과정 및 강의

(1) 현 황

이수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중 교과과정이나 강사의 평가 및 현장활용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는 다음의 표들과 같다.

< 표 III-9 > 강의중 교과내용의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기 타
93	2 급	7.6	38.0	49.5	3.3	1.1	0.5
	소계	7.6	38.0	49.5	3.3	1.1	0.5
94	1 급	12.5	25.0	59.7	2.8	0	0
	2 급	9.2	33.5	52.0	4.1	1.2	0
	소계	10.8	29.3	55.8	3.5	0.6	0
95	1 급	0	17.0	59.6	20.2	3.2	0
	2 급	0	16.5	66.0	13.3	4.2	0
	소계	0	16.7	62.8	16.7	3.8	0
96	1 급	0	25.6	67.4	7.0	0	0
	2 급	0	27.3	59.1	13.6	0	0
	소계	0	26.4	63.3	10.3	0	0
총 계		4.6	27.6	57.8	8.5	1.4	0.1

교과내용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의견이 32.2%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통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연수생들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강의의 수준과 깊이가 비교적 낮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III-10 > 강사의 만족도

(단위 : %)

년 도		상	중	하	무 응 답
93	2 급	27.8	47.8	19.0	5.4
	소계	27.8	47.8	19.0	5.4
94	1 급	27.8	56.0	6.7	9.5
	2 급	27.4	51.5	14.8	6.3
	소계	27.6	53.7	10.8	7.9
95	1 급	55.3	39.4	2.1	3.2
	2 급	27.1	61.2	7.4	4.3
	소계	41.2	50.3	4.8	3.7
96	1 급	14.0	69.8	16.3	0
	2 급	27.3	61.4	11.4	0
	소계	20.6	65.6	13.8	0
총 계		29.3	54.4	12.1	4.2

< 표 III-11 > 현장활용 가능성

(단위 : %)

년 도		상	중	하	무 응 답
93	2 급	26.8	49.6	17.5	6.1
	소계	26.8	49.6	17.5	6.1
94	1 급	24.2	57.8	8.3	9.7
	2 급	28.1	49.8	13.0	9.1
	소계	26.1	53.8	10.7	9.4
95	1 급	43.6	46.8	4.3	5.3
	2 급	29.8	57.4	8.5	4.3
	소계	36.7	52.1	6.4	4.8
96	1 급	14.0	51.2	34.9	0
	2 급	11.4	56.8	31.8	0
	소계	12.7	54.0	33.3	0
총 계		25.5	52.4	17.0	5.1

현장활용 가능성은 이수과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연수생들을 위한 이수과정인지, 연수를 위한 이수과정인지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 현장에서 필요치 않은 교육은 결국 시간보내기의 형식적인 연수밖에 될 수 없다.

< 표 III-12 > 연수 교과내용의 구성

(단위 : %)

년 도		이론강의 : 실습 60 : 40	이론강의 : 실습 70 : 30	이론강의 : 실습 80 : 20	이론강의 : 실습 50 : 50	이론강의 : 실습 40 : 60	이론강의 : 실습 30 : 70	기타(무응답)
93	2 급	14.4	0	0	34.2	27.9	23.5	0
	소계	14.4	0	0	34.2	27.9	23.5	0
94	1 급	17.8	0	0	31.0	23.8	27.4	0
	2 급	13.8	0	0	35.5	25.3	25.4	0
	소계	15.8	0	0	33.3	24.5	23.4	0
95	1 급	22.3	6.4	4.3	37.2	18.1	10.6	1.1
	2 급	13.8	3.7	1.6	25.5	26.1	24.5	4.8
	소계	18.0	5.0	2.9	31.4	22.1	17.6	3.0
96	1 급	23.3	9.3	2.3	30.2	14.0	20.9	0
	2 급	22.7	6.8	0	18.2	18.2	34.1	0
	소계	23.0	8.0	1.2	24.2	16.1	27.5	0
총 계		17.8	3.3	1.0	30.8	22.7	23.7	0.7

교육내용 구성으로 실습에 중점을 두는 참여식 교육방법을 연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탐구의 역동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의도를 엿볼수 있다.

< 표 III-13 > 연수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

(단위 : %)

년 도		강의	토의·세미나	사례 발표	시청각	현장 답사	개인 과제	조별 과제	워크숍	실기 가능	기타
93	2 급	15.6	20.8	11.0	5.6	8.9	4.3	18.0	7.8	8.0	0
	소계	15.6	20.8	11.0	5.6	8.9	4.3	18.0	7.8	8.0	0
94	1 급	17.0	24.8	20.9	2.4	10.2	4.4	6.3	11.2	1.1	1.7
	2 급	13.7	23.0	17.5	7.5	13.7	2.2	13.5	5.1	3.3	0.5
	소계	15.4	23.9	19.2	4.9	11.9	3.3	9.9	8.2	2.2	1.1
95	1 급	10.6	35.1	12.8	1.1	19.1	1.1	3.2	4.3	3.5	4.2
	2 급	4.3	38.8	8.5	2.7	3.2	0.5	22.3	6.4	10.6	2.7
	소계	7.4	37.0	10.7	1.9	11.2	0.8	12.7	5.4	9.5	3.4
96	1 급	16.3	32.6	14.0	2.3	18.6	4.7	11.6	0	0	0
	2 급	20.5	36.4	11.4	2.3	9.1	0	6.8	9.1	4.5	0
	소계	18.4	34.5	12.7	2.3	13.8	2.4	9.2	4.5	2.2	0
총 계		14.2	29.0	13.4	3.7	11.5	2.7	12.4	6.5	5.5	1.1

강의의 방법으로는 개인적 소양에 의한 습득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된다. 한가지 방법으로 일괄적인 교육은 오히려 이수과정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 이수과정운영 제도는 1급 160시간(10과목) 이상에 4주 통원, 2급(8과목) 120시간 이상에 3주 통원, 3급(9과목) 50시간 이상에 1주 합숙 과정으로 중앙에서 단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 이수과정에 참가한 연수생은 숙식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2) 문 제 점

① 단기 집중식의 이수과정기간 편성

일정기간에 집중적인 이수과정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질의 지도사 양성에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유사자격증 이수과정기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수과정기간이 짧다. 사회체육지도자나 상담원의 이수과정시간에 비해 작게는 3배, 크게는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전문강사의 부족 및 강의방법

a. 청소년관련 전문강사의 부족과 과목강좌수의 과다

-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학문분야라는 한계 때문에 청소년지도 현장과 이론을 제대로 겸비한 청소년 전문강사가 부족하고, 각교과목 강좌의 과다 편성으로 인해 관련 전문가 초빙에 어려움이 있다.

- 일반 연수원의 강사 강의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의료 지급 액수가 낮다.
- b. 자질과 지도능력 함양 보다는 자격취득 위주의 운영
현장에서의 청소년지도 능력 함양이라는 청소년지도자 양성의 진정한 목적보다는 자격증 취득위주의 강의 중심 성향이 강함. 이로 인해 실습, 세미나, 분임토의 등과 같은 참여식 수업이 부족하고 강의 기자재, 설비, 시설환경등이 미흡하다.

(3) 개선방안

① 이수과정시기 및 방법의 조정

- a. 현직 근무 지도사들이 이수과정 참여가 용이한 시기를 선택하고 분기별(분기에 1주씩)로 나누어서 실시하거나 과목별 학점제 또는 강좌를 개설하여 일정기간내에만 법정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검정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b. 과목의 합리적 운영
 - 검정과목의 이수과정운동을 교재중심의 이론강의로 편성하되 비검정과목은 실습·세미나·분임토의 등 참여식 강좌를 집중 편성하여 연수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연수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실습 및 현장실습 시간을 확대·편성한다.

② 이수과정 방법의 조정

- a. 지방의 각 광역시에서의 이수과정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실시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자격검정을 한 기관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면 이수과정운영 방법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여 많은 질높은 지도사를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b. 관련학과 교수들과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자세로 교재의 재검토와 깊이있는 학문적인 분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또한 이수과정자체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이수과정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 c. 개발원 자체 이수과정시설을 확보하여 많은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이수과정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3) 연수기간 및 방법

(1) 현 황

현재까지의 이수과정 실시 시기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1급 1과정, 2급 3과정, 3급 1과정 또는 2과정으로 운영 되었으며 수련시설의 비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왔다. <표 III-14>에 나타났듯이 실시 시기는 개개인의 선호도 및 직장 의 여건에 맞추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수과정 참여의 유형을 살펴보면 합숙의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지방에서 이수과정에 참가한 연수생들의 바램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하지만 연수장소 및 재원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전기간 합숙의 형태로는 이수과정의 진행이 매우 어려우며 통근과 합숙의 병행 형태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 표 III-14 > 연수실시 시기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3	2 급	9.4	11.4	2.9	5.4	4.7	3.3	2.3	5.0	4.3	14.4	27.2	9.7
	소계	9.4	11.4	2.9	5.4	4.7	3.3	2.3	5.0	4.3	14.4	27.2	9.7
94	1 급	9.7	8.3	2.8	4.2	0	1.4	1.4	5.6	5.6	27.8	29.0	4.2
	2 급	1.2	5.8	5.8	4.6	4.0	3.5	4.0	13.9	24.9	15.1	11.4	5.8
	소계	5.4	7.0	4.3	4.4	2.0	2.4	2.7	9.8	15.3	21.5	20.2	5.0
95	1 급	27.6	10.5	4.7	1.1	2.1	1.1	1.1	1.1	17.9	31.7	1.1	0
	2 급	9.0	10.6	4.8	10.1	11.7	14.9	16.5	5.3	6.9	9.1	1.1	0
	소계	18.3	10.5	4.8	5.6	6.9	8.0	8.8	3.2	12.4	20.4	1.1	0
96	1 급	4.7	9.3	2.3	7.0	2.3	2.3	4.7	2.3	7.0	41.9	11.6	4.6
	2 급	2.3	15.9	11.4	4.5	2.3	13.6	13.6	2.3	18.2	9.1	6.8	0
	소계	3.5	12.6	6.8	5.7	2.3	8.0	9.2	2.3	12.6	25.5	9.2	2.3
총 계		9.2	10.4	4.7	5.3	4.0	5.4	5.7	5.1	11.1	20.5	14.4	4.2

연수 실시 희망월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선호하는 달은 10월, 11월, 2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든 월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 제 점

- ① 이수과정의 운영 시기는 수련시설의 성수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선발된 연수생들이 참가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계절적인 탓으로 교육효과 역시 반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지방에서 참가한 연수생들은 숙식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경비가 과다 지출 된다.

(3) 개선방안

- ① 학생들의 방학 시기(성수기)를 고려하여 가능한한 이수과정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수과정을 분기별(분기에 1주씩)로 나누어서 실시하거나 현행의 교과편성을 과목별 학점제로 전환, 정기강좌를 개설하여 일정 기한내에 법정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예: 유네스코 청소년활동 지도자 과정)

※ 단, 이러한 사항은 본원의 자체 연수시설 확보 후 도입 가능

- ② 이수과정운영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효과적인 이수과정을 운영 해야 한다.

< 표 III-15 > 이수과정운영 방법의 장·단점 비교

구 분	통 원	합 숙
장 점	· 현행 사업운영 예산에 기초한 사업 운영 · 비합숙 기간 중 연수참가자들이 일과 후 근무지에서의 잔무처리 가능 · 일과 후 타 연수생들과의 다양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가능	· 연수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음 · 지방에서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이 일부 연수경비를 자비로 부담할 경우 연수 경비의 절감 · 합숙자체가 교육이며 연수생들의 다양한 정보를 교환
단 점	· 법정 연수 이수시간 운영의 어려움 · 타 지역에서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의 숙식문제와 이로 인한 연수생의 개인적 연수경비의 지출 증가 · 개개인의 산 경험과 정보를 얻을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음	· 일과 후 연수생 활동 제약(예:자료 및 정보 수집, 소속기관의 잔무처리) ·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연수생들은 불필요한 연수경비 지출 ·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므로 효과가 반감됨

현재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통원과 합숙의 병행형태 연수운영이 능률적이라 판단되며 합숙의 비율을 20% 내외로 고려하여 이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3. 평가 및 수료

1) 현 황

(1) 교육평가(청소년지도사 양성 연수운영규정 제40조)

교육평가는 학습평가(80%), 근태평가(10%), 현장실습평가(10%)로 한다.

① 학습평가

- 학습평가는 이수과정기간 중 학습하신 내용을 수료시험으로 평가한다.
- 수료시험은 80점 만점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평가

- 현장실습 평가는 이수과정기간 중 이수과정진행 본부에서 부여하는 현장실습을 마치고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근태평가

- 근태평가는 출결 및 학습태도, 연수생활상태 등에 대하여 “근태평가 및 징계처분 기준표”에 의하여 담당강사 및 연수생활지도직원이 평가한다.
- 근태평가 기준에 의하여 별점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제적 처분된다.

< 표 III-16 > 근태평가 및 징계처분 기준표

구분	위 반 사 항	기 준	감 점	징 계 종 류
연 수 생 활	무 단 결 석	1일	1.0	○ 별점 합계 5점 이상은 제적 처분 ○ 별점 합계 3점 이상은 경고 ○ 별점 2점 이상은 주의 ○ 동일한 행위가 2개 이상의 감점사유 에 해당할 경우 별점이 높은것 하나를 적용 한다
	무 단 결 강	1회	0.5	
	지 참	1회	0.2	
	연 수 태 도 불 성 실	1회	0.5	
	보 고 서 미 제 출	1회	0.3	
	공공 시설 파손, 훼손	1회	1.0	
	질 서 문 란	1회	0.5	
	통 고 사 항 불 이 행	1회	0.5	
합 숙 생 활	시 험 부 정 행 위	1회	1.0	
	무 단 외 출	1회	0.5	
	무 단 외 박	1회	1.0	
	귀 원 시 간 지 침	1회	0.2	
	생활실정리및청소불량	1회	0.3	
	원내주류 반입및 음주	1회	1.0	
	생 활 수 칙 위 반	1회	0.5	
	폭력 및 도박, 도박	1회	1.0	

※ 다음 사항은 감점 및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 직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본인의 결혼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가정의 경조사

(2) 교육수료(청소년지도사 양성 연수운양규정 제44조)

연수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연수시간의 9/10이상(108시간), 교과목별로는 이수시간의 1/2이상(8시간)을 수강하고, 위의 세 과목의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징계 및 제적(청소년지도사 양성 연수운양규정 제48조 및 50조)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제적처분된다.

- 근태평가 기준에 의한 별점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질병, 기타 연수생의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을 경우
- 총 연수시간의 9/10이상(108시간) 및 이수과목별로 1/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②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문 제 점

- (1) 교육평가는 학습평가(80%), 근태평가(10%), 현장실습평가(10%)로 구분되어 있어 학습평가의 비중이 높고 근태평가 및 실습평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 (2) 근태평가에서 연수중 외출이나 보고서 미제출시의 평가기준이 미약하다
- (3) 징계처분의 감점이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로 규정되어 있어 연수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감점행동을 하게된다.

3. 개선방안

- (1) 학습평가의 비율을 낮추고 근태평가 및 실습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예: 학습평가 60%, 근태평가 20%, 실습평가 20%)
- (2) 외출은 1점, 무단외출은 3점 정도의 감점을 주어 제재하고 과제물의 미제출이나 지각제출은 수료일정에 따른 일괄적인 수료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많은 감점(5~10)이나 퇴교를 명한다.
- (3)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근태평가의 기준을 재 정립하여 엄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격검정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형식적인 면접시험을 대체한다.
- (4) 현행 감점점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감 점 행 동	▪ 지참 ▪ 귀원시간지침 ▪ 외출	▪ 보고서미제출 ▪ 생활실관리	▪ 무단결강 ▪ 연수태도불성실 ▪ 질서문란 ▪ 통고사항불이행 ▪ 무단외출 ▪ 생활수칙위반	▪ 무단결석 ▪ 공공시설파손 ▪ 시험부정행위 ▪ 무단외박 ▪ 원내주요반입,음주 ▪ 폭력, 도박, 도박 ▪ 과제물 미제출
변경 전 감점	0.2	0.3	0.5	1.0
변경 후 감점	1.0	2.0	3.0	5.0

Ⅳ.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운영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하여 청소년육성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공인자격제도인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기본 기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함양에 근본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인격적 품성과 태도,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 현장에서 직접 지도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기능을 습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청소년지도의 전문인력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자격과정안으로서 뿐만아니라 청소년관련교육의 지표로서 청소년관련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모형이 되었고 나아가 청소년학의 모형으로써 청소년학체계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급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이미 청소년지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력이 풍부한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전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적 자질향상이라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기본틀인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장에서는 현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실태분석

현재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크게 정부가 지정승인한 단체와 대학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주관기관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관기관별로 이수과정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수기관의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현황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을 비롯한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등의 단체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지도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연수기관의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표 IV-1 참조).

< 표 IV-1 >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구분	1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2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3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과목명	이수시간	과목명	이수시간	과목명	이수시간
교양 영역	교양특강	16시간 이상	교양특강	8시간 이상	교양특강	4시간이상
전공 영역	청소년문화*	9과목,	청소년심리*	6과목,	청소년심리*	4시간이상
	청소년문제*	144시간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98시간	청소년문화*	4시간이상
	청소년복지*	이상	청소년지도론*	이상	청소년문제*	6시간이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1과목당	청소년활동론*	(1과목당	청소년관계법	4시간이상
	운영*	16시간	청소년성교육	16시간	규와 행정*	
	집단지도*	이상)	청소년상담연습	이상)	청소년지도론*	6시간이상
	청소년과 역사		현대사회와 청소년		청소년상담*	4시간이상
	청소년정신건강		청소년의 사회화		청소년활동론*	10시간이상
	청소년심리검사		청소년의 시민생활			(총38시간 이상)
	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정책연구		프로그램작성연습			
	청소년기관운영		지도방법연습			
	청소년연구실습		놀이와 레크레이션지도			
	지도자의 리더쉽		전통문화활동지도			
	지도방법연구		인간관계활동지도			
	청소년진로지도		야외활동지도			
	청소년건강지도		스포츠활동지도			
	청소년활동세미나		문예활동지도			
	활동지도사례연구		봉사활동지도			
			예절활동지도			
실습 영역			현장실습	16시간 이상	현장실습	8시간 이상
합계		10과목, 160시간 이상		8과목, 120시간 이상		9과목, 50시간 이상

* 표시과목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임.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이수과정 내용은 교양, 전공, 실습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급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10과목에 160시간이상, 2급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8과목에 120시간이상, 3급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9과목에 50시간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검정과목이 필수과목화되어 있고 검정과목이외의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지도에 대한 기본 철학과 방향성을 비롯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이 청소년지도의 독자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론적 체계성이 매우 미흡하다.

둘째, 각 등급별 이수과정이 해당등급별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나 업무를 중심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과정별 이수과목이나 각 과목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내용상 서로 차이가 없어 등급별 이수과정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이수과정이 이론중심의 이수과목에 편중하고 일선현장에서 요구되는 지도기술이나 활동기능중심의 이수과목이 매우 부족하여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육성업무 등 청소년지도 현장과의 연계성이 미약하다.

넷째, 이수과정이 자격검정을 대비한 교과편성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선현장에서의 청소년지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강좌를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2) 국내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 교육과정 현황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과는 청소년학과와 청소년지도학과 두 학과로 현재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카톨릭대학의 5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이 가운데 2급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한 학부과정은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산대학교, 순천향대학교의 4개 대학에, 1급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한 대학원과정은 명지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의 2개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표 IV-2>와 <표 IV-3>과 같다.

< 표 IV-2 > 청소년관련학과 교육과정

구분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1 학 년	전공 기초	교육학	청소년학개론,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지도론	심리학개론, 평생교육론 인간과 교육	교육학개론 교육사
	전공 필수	청소년스카우팅 현대사회와 청소년 청소년심리 청소년수련 I		청소년교육론 발달심리학	청소년스카우팅 교육철학 교육과정 사회교육개론
	전공 선택			청소년학개론 집단상담, 인간관계론	
2 학 년	전공 필수	청소년지도론 교육과 윤리 청소년의사회화 예절활동지도 인간관계활동지도 놀이와 레크레이션지도 청소년레크레이션 I 교육철학 및 교육사	연구방법론 상담이론 청소년심리 청소년복지	상담이론 청소년심리학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연구법	학습심리 교육행정 교육과 윤리 청소년심리 현대사회와 청소년 교수이론 및 공학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 수련실습
	전공 선택	청소년수련 II	사회적행동, 청소년교육 집단지도, 사회교육론 진로/학교상담 사회조사론	청소년문제론, 성격심리학 태크레이션지도 청소년심리검사 사회교육론, 청소년상담론 청소년관계법 및 행정	청소년레크레이션 I 인간관계활동지도 사회교육과 특수교육
3 학 년	전공 필수	청소년상담론 봉사활동지도 청소년활동론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사회교육개론 청소년레크레이션 II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정책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청소년지도실습	청소년교육과정개발	청소년상담론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성교육 사회교육통계 청소년관계법규와행정 청소년레크레이션II
	전공 선택	청소년교육과정및 평가 청소년의 시민생활 청소년상담연습 사회교육방법론	성격이론 일탈과 비행 자료처리법 가족/집단상담 상담과정과 기법 청소년이상심리	상담실습 청소년복지론 범죄심리학 청소년활동론 정신위생, 전통문화활동 청소년수련실습 청소년지도성이론 청소년교육평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청소년과 사회교육 스포츠활동지도 사회교육방법론 청소년과 시민생활 청소년상담연습 청소년의 사회화 농촌청소년지도론
4 학 년	전공 필수	현장실습			현장실습 청소년지도방법연습
	전공 선택	청소년지도자론 평생교육론 청소년교육사 농촌청소년지도론 사회조사방법 청소년성교육 프로그램작성연습 지도방법연습	청소년심리검사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인간관계론 개별지도 놀이와 레크레이션지도	사회조사방법론 청소년시설경영론 상담세미나 수련활동세미나	프로그램작성연습 청소년정책 평생교육론 전통문화활동지도 청소년비행과 교정 청소년문학비교연구
총과 목수		33과목	30과목	33과목	39과목

< 표 IV-3 > 청소년관련학과 대학원 교육과정

구분		명지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전공		청소년지도학	청소년지도행정	청소년학
공통 과목	필수	0 석사과정 : 청소년과 지역사회,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집단지도		조사방법과 통계, 사회복지개론 원봉사론, 논문연구, 실습
		0 박사과정 : 청소년리더쉽연구, 사회교육연구방법 청소년커뮤니케이션		
	선택			청소년복지론, 가족치료론 사회복지 및 청소년법규 교정복지, 치료레크레이션 사회복지 및 청소년기관행정론 슈퍼비전론, 집단지도론 놀이치료, 약물남용상담
전공 과목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연구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연구 청소년복지, 청소년성교육연구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연구 청소년활동세미나 활동지도사례연구 프로그램개발세미나 청소년수련연구 청소년수련실습	교육인사행정, 교육조직관리 교육제무관리, 청소년리더쉽 집단지도연구, 현장실습 청소년정책세미나 청소년복지세미나 청소년커뮤니케이션 청소년문제연구세미나 청소년행정세미나 국제청소년수련연구	청소년학개론, 청소년문화론 청소년문제론, 청소년과 역사 청소년심리론, 청소년지도론 청소년상담론, 청소년활동론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청소년상담세미나 청소년정책세미나 청소년진로지도
총 과목수		18과목	18과목	27과목

<표 IV-2>와 <표 IV-3>을 통해 청소년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에서 현재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중 33%~61%(학부) 또는 60%~87%(대학원)에 해당되는 교과목이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관련학과의 주 목표가 청소년지도사양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인접학문에서 개설되는 관련 과목들이 그대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관련학과의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부학교에서는 교과목의 30%이상이 교육학 또는 심리학 등 특정영역에 편중되어 청소년관련학과의 독창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목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학부와 대학원과정간에 단계별로 심화되는 교육내용은 보이지 않고 학부과정의 교과목중 과목명만 약간 바꾸거나(학부과정 교과목에 ‘-연구’나 ‘-세미나’명

청만 첨가) 심지어 타학교의 학부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도 있는 실정이다.

넷째, 대부분 교과목이 이론중심의 지식이해를 돕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되어 청소년지도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실제에 관련된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지도실습이나 실무수행경험을 요구하는 과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소년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각 대학교의 청소년관련학과가 전문적이고 유능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발달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학의 분명한 이론적 체계속에서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실체적인 기능습득과 함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육과정을 시급히 편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개선안

1)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개선방향 및 주요 개선내용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육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현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등급별 이수과정의 차별화도모, 이론적 체계성확립, 이수과목의 다양화, 청소년지도기술 습득의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등급별 이수과정의 차별화 도모

1급, 2급, 3급의 각 등급별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그 역할과 업무에 따라 이수과정 내용을 조정하여 그 수준을 제고하고 각 등급별 이수과정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각 등급별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그에 따른 연수의 중점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V-4 참조).

< 표 IV-4 > 각 등급별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중점내용

	1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2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3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자격	· 청소년기관장, 부서장 등 행정수준 관리자 · 일선 청소년지도자를 지원 감독하는 경력지도자 - cf. 교장, 교감, 교무과장 등	· 특정한 활동영역의 전문 기능을 보유한 청소년수련활동 전문지도자 - cf. 일반교사(특정한 전공을 가진 중·고등학교 교사)	· 전문성보다 일반성을 요구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지도하는 일반지도자 - cf. 일반교사(초·중·고교 교사)
역할과 기능	· 청소년단체나 시설 등 청소년기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 지도감독, 평가 등 전과정을 관리운영	· 현장에서 청소년을 직접 지도 · 특정영역의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 편성 및 실행 · 청소년수련활동지도의 중추적 역할	· 현장에서 청소년을 직접 지도 · 일반적인 청소년수련활동 실행 · 행사성 활동실행 · 청소년생활지도
연수의 중점 내용	· 청소년보다 청소년지도자 지도감독, 기관운영, 정책 등에 관련내용 · 연령과 경력을 요구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예절수양활동, 인간관계활동 등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에 관련된 전문적 내용 ·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생활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 과학활동 등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에 관련된 일반적 내용 ·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지 않은 청소년수련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자연체험활동 등

(2) 이수과정의 이론적 체계 정립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청소년 관련분야의 관계이론과 경험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하여 청소년지도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 정립된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편성한다. 특히,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청소년육성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시켜 구성한다.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의 품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영역, 청소년육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영역, 현장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실습영역의 3영역으로 구분한다. 교양영역은 철학, 역사, 심리학, 교육학, 가정학 등 다양한 관련학문을 위주로 당해년도 연수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부문별로 운영하도록 시간수만

제시되어 있고, 기능실습영역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특
정의 청소년수련활동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전공
영역은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지도와의 관련성에 따라 청소년관련영역을 개괄적으
로 나타내는 기본과목, 각 영역별 기본과목을 세분화시켜 발전된 심화과목, 위에
언급된 관련영역외에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
련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표 IV-5 참조).

< 표 IV-5 > 전공영역의 이수과목

기본과목	목표 및 주요 내용	심화과목
청소년학개론	· 다양한 청소년관련분야의 전반적인 이해	
청소년지도론	· 청소년지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법 습득 및 청소년지도의 전체적인 과정과 기본원리 이해	· 청소년지도방법, 프로그램개 발과 운영, 청소년상담, 청소년지 도자론 등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육성사업중 중심활동인 청소년수련 활동에 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정립	· 전문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자연체험활동, 예절수양활동, 생 활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청소년생활론	· 청소년의 가치관에서 규범, 태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연 구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모	·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청소년의 시민생활, 진로와 직업 등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성장에 영향을 주는 공간, 지역, 환 경의 문제를 청소년육성의 관점에서 탐구	· 청소년기가족, 청소년과 지역 사회, 청소년과 대중매체, 정보화 사회와 청소년 등
청소년복지론	· 전전한 청소년 성장발달에 관련되는 제반 사회제도를 고찰하고 청소년복지개념의 일반 적인 추세와 주요쟁점을 분석	· 청소년인권, 청소년문제, 특수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교류론	· 지역사회, 남북한, 한민족, 국제사회 등 다 양한 사회간에 진행되는 교류의 의미와 역동 성을 탐구하여 청소년생활과 사회구조간의 연결관계를 인식하고 보다 다양한 인간관계 이해	· 국제화와 청소년, 북한청소년 이해, 한민족청소년연구, 세계청 소년비교연구 등
기타관련과목	· 청소년행정, 청소년정책,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사 등 · 청소년세미나, 청소년연구방법, 청소년지도사배양연구 등	

이러한 전공과목의 구분은 전공과목 선택의 기준을 위한 학문적인 영역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은 각 등급별 이수과정의 특성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다. 청소년관련분야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총론서 역할을 하는 청소년학개론을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과정의 공통과목으로 하고 다른 과목들은 각 등급별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업무에 따라 분류하여 편성하였다. 이수과목명은 실제 발간되는 교재의 명칭이 아니라 단지 교재내용의 범위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 가족’이라는 이수과목명은 ‘청소년발달과 가족’, ‘청소년과 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될 수 있다.

(3) 이수과목의 다양화

이수과목을 보다 심화·다양화시킬 뿐만아니라 청소년지도자들이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전공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을 다시 자격검정과목과 비자격검정과목으로 세분화한다. 청소년지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이 가운데 기본적인 과목만 자격검정과목화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중심의 형식적인 연수에서 탈피한다(표 6 참조).

< 표 IV-6 >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수

	1급 지도사과정	2급 지도사과정	3급 지도사과정
총과목	11과목	10과목	6과목
교양영역	-	-	-
전공영역	10과목	8과목	5과목
필수과목	7과목	6과목	5과목
자격검정과목	5과목	4과목	3과목
비자격검정과목	2과목	2과목	2과목
선택과목	3과목	2과목	
기능실습영역	1과목	2과목	1과목

(4) 청소년지도기술 습득의 강화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이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제적인 기술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전문가로서의 인식과 이해력을 갖출 뿐만아니라 현장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관찰이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실습영역을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문 기능습득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전의 8~16시간에 지나지 않던 이수시간을 20~50시간으로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지도 기술 및 기법과 활동기능 등 실질적인 지도능력 습득을 강화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을 각 등급별 청소년지도사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청소년지도사 1인이 최소한 1가지 수련활동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문화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기능실습영역의 공통과목으로 하고 자연체험활동, 생활체육활동, 예절수양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각 등급별로 구분하여 구성한다(표 IV-7 참조). 2급 청소년지도사는 그 중추적 역할을 감안하여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표 IV-7 >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중 기능실습영역과목

구분	1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2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3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기능 실습 영역	전통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예절수양활동 문화예술활동	전통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자연체험활동 생활체육활동 예절수양활동 문화예술활동	전통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자연체험활동 생활체육활동
과목수	4과목중 1과목(총20시간)선택	6과목중 2과목(총50시간)선택	4과목중 1과목(총20시간)선택

2)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개선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개선안을 제시하면 <표 IV-8>과 같다.

< 표 IV-8 > 청소년지도사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개선안

		1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2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3급 청소년지도사 과정	
구분		과목	이수시간	과목	이수시간	과목	이수시간
교양		교양특강	총30시간 이상	교양특강	총30시간 이상	교양특강	총20시간 이상
전공	필수	청소년학개론 청소년복지론* 청소년환경론*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정책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문화*	7과목, 총108시간 이상	청소년학개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행정* 청소년지도론* 청소년심리* 프로그램개발과운영*	6과목, 총96시간 이상	청소년학개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심리* 청소년지도론 청소년상담	5과목, 총60시간 이상
	선택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과 대중매체 한민족청소년연구 청소년사 세계청소년비교연구 청소년인권 청소년세미나 청소년연구방법	3과목, 총42시간 이상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생활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기가족 북한청소년이해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지도사레연구 국제화와 청소년	2과목, 총24시간 이상		
기능 실습		전통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예절수양활동 문화예술활동	1과목, 총20시간 이상	전통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자연체험활동 생활체육활동 예절수양활동 문화예술활동	2과목, 총50시간 이상	전통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자연체험활동 생활체육활동	1과목, 총20시간 이상
합계			2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 표시과목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임.

V.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배치

청소년지도를 위한 지식·기능·자질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지위와 역할의 안정성을 부여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는

청소년지도자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자격에 맞는 채용근거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청소년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5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에 의해 1993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1996년 12월말까지 네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1·2·3급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으나 자격검정에 있어 등급별 특성반영이 미흡하여 난이도가 낮았고 면접시험등이 형식적으로 흐름으로써 자격검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인원을 현장수요와 연계함으로써 양성인원과 배치가 균형있게 이루어져 인력의 유희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격검정제도의 강화

현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방법은 등급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동일한 유형의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는행식 출제로 난이도가 낮아 탈락율이 저조하여 전문성 심화유도의 효과측면에서 기대목표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의 경우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동안에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 여부를 파악하는데는 한계점을 안고 있어 형식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 등급간의 시험난이도의 조정과 면접시험의 합리적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 현 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은 전공영역이 있어서 1급은 5과목, 2급은 4과목, 3급은 7과목 종합시험으로 치루어 지고 있으며<표 V-1>

< 표 V-1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구 분	검 정 과 목	비 고
1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집단지도	5과목
2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심리,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청소년지도론, 청소년활동론	4과목
3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청소년지도론,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론	7과목 종합시험

그동안 1993년도부터 시행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1996년 12월말 현재 2,477명(1급244명, 2급1,414명, 3급81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표 V-2>

< 표 V-2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실시 현황

연도별	구 분	응시원서 접수인원	결시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비율
합 계		2,739	115	2,624	2,477	94.44%
93년도	소 계	744	11	733	713	97.41%
	2급	505	8	497	485	97.79%
	3급	239	3	236	228	96.61%
94년도	소 계	763	33	730	708	96.99%
	1급	99	-	99	96	96.97%
	2급	395	9	386	375	97.15%
	3급	269	24	245	237	96.73%
95년도	소 계	842	45	797	715	89.71%
	1급	104	-	104	101	97.12%
	2급	433	21	361	361	87.62%
	3급	305	24	253	253	90.04%
96년도	소 계	390	26	364	341	93.3%
	1급	52	1	51	47	92.2%
	2급	213	14	199	193	97.0%
	3급	125	11	114	101	87.1%

자격검정의 방법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치루워지고 있으며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을 평가하여 각 면접시험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이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자격검정에 응시 할 수 있다.<표 V-3>

< 표 V-3 > 학력별 이수과정인정

학 력 별	이 수 과 정 인 정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자	1급청소년지도사과정(1급검정)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학사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급청소년지도사과정(2급검정)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3급청소년지도사과정(3급검정)

※ 청소년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 문 제 점

(1) 검정과정의 등급별 특성반영 미흡

1·2·3급 동일유형의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등급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급간의 문제내용에 차별성이 부족하고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2) 문제은행식 검정제도에 따른 출제범위 한정

문제은행 출제로 출제범위가 한정되며 자격검정 난이도가 낮아 탈락률이 저조하여 형식적 검정과정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검정시험 응시자의 94.44%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표 V-4>

< 표 V-4 > '93~'94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 비율

'93	'94	'95	'96
97.41%	96.99%	89.71%	93.3%

(3) 형식적 면접시험운영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연수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동일날자에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름으로써 청소년지도사로서 자질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면접시험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표 V-5>

< 표 V-5 > 자격검정 방법 및 시간

('96년 자격검정계획)

구 분	시 험 방 법	시 험 시 간
필기시험	○ 객관식 선택형 - 1급 : 100문항 - 2급 : 80문항 - 3급 : 40문항	○ 1급 청소년지도사 : 110분 ○ 2급 청소년지도사 : 90분 ○ 3급 청소년지도사 : 40분 * 당일 10:30 - 12:20
면접시험	○ 면접위원 3명이 응시자 5명을 집단면접 - 1개조(3명) 총6개조(18명운영) - 응시자는 1개조 5명 총78개조 편성	○ 1개조 면접 : 10분소요 ○ 각 등급별 동시 면접 * 당일 13:30 - 16:00

3) 개선방안

(1) 각 등급별 난이도 조정

첫째, 교재의 전면검토 작업과 아울러 문제은행을 보강하여 등급별 난이도를 조정하여 차별성을 강화한다.

둘째, 2·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현행방법을 유지하되, 단답형 문제를 일정비율 출제하여 보강한다.

세째, 1급 청소년지도사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출제를 논술형 고사로 전환한다.

(2) 시험문제 구성의 체계화

자격검정시험 문제출제에 있어서 각 과목별 문항의 난이도를 고르게 조정하여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여러과목에서 40점 수준의 점수를 받은자가 특정과목에서 90점을 받아 평균점수가 높아져 합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득점형태는 방지되어야 한다.

○ 면접시험의 합리적 운영

각 이수과정별로 4주에서 1주까지의 연수과정을 통하여 근태평가와 생활관리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사로서 자질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면접시험에 대체하는 등 면접시험의 요식화를 피하기 위한 동 과정의 강화 또는 폐지가 요망된다.

2.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활용의 활성화

이수과정을 수료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지도사들의 배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시행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청소년관련업무 취업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여부에 대한 조사가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배치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자 및 이들을 수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1) 현 황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과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V-6>

< 표 V-6 >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14조 관련)

(1) 수련시설

배치대상 수련시설	배치기준
청소년수련원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관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마을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의 집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청소년수련의 집으로서 특정계절에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종유스호스텔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1,0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제2종유스호스텔	○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제3종유스호스텔	○ 3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야영장	○ 3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 시·도내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실 또는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수련실 또는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수련거리의 실시없이 이용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 1. 교육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생전용의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배치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상위급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2) 청소년단체

배치대상 수련시설	배치기준
청소년을 회원으로 둔 단체	○ 청소년회원수가 2,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수가 2,0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인마다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수가 10,000인이상이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수의 5분의 1이상은 1급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1993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1996년 12월말까지 2,477명(1·2·3급)에 이르며 단체를 제외하고 시설 종류별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V-7>

<표 V-7> 시설종류별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

종 류	전 체 시설수	배치대상 시설	배치기준 합 계	실제배치 인원	지도자 확보율	초과배치		기준일치		부족배치		미배치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계	432	356	532	376	71%	50	14%	82	23%	23	6%	201	56%
수련원	5	5	21	13	62%	0	0%	1	20%	4	80%	0	0%
수련관	30	26	72	47	65%	6	23%	2	8%	8	31%	10	38%
수련실	154	154	154	44	329%	5	3%	32	21%	2	0%	117	76%
수련마을	88	84	105	143	136%	26	31%	27	32%	1	1%	30	36%
수련의 집	22	22	57	74	130%	7	32%	4	18%	7	32%	4	18%
야영장	109	41	80	6	8%	0	0%	3	7%	1	2%	37	90%
유스호스텔	24	24	43	49	114%	6	25%	13	54%	2	8%	3	13%

자료 : 문화체육부, '96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93년부터 '96년까지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생을 작업별로 보면 청소년관련기관 근무자는 77.7%이며 무직이나 기타가 22.3%로서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V-8>

< 표 V-8 >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연수생 직업별 분포도

계	시설 / 단체	공무원 / 교사	무직/기타
2,291	1,181명 (51.55%)	599명 (26.15%)	511명 (22.30%)

* '92년도 특별과정과 '96년도 추가과정 인원은 제외된 인원임

2) 문 제 점

(1) 형식적 배치 대상 및 배치기준 설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을 보면, 수련시설의 청소년야영장의 경우 3급지도사 1인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의 경우, 대부분 야영에 필요한 토지만을 준비하여놓고 비상근 관리자가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형식적 배치기준을 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단체의 경우 회원수가 2,000인 이하의 경우 1급 또는 2급지도사 1인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청협에 가입된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회원은 1995년 현재 2,455,085명이며 청소년지도사 수는 212,132명 이다.

(청소년백서 1995)

단순 수치로 계산할 경우 청소년단체 법적인 차원에서 배치되어야 할 1급 또는 2급지도사의 수는 약 1,227명 이다. 현재 활동하는 지도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이다.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는 상근지도자가 전체의 2.0%(4,133명), 비상근지도자 60.2%(127,733명), 자원봉사자가 37.8%(80,266명)으로 구성 되어있어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소지한 청소년지도사의 분포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지도자의 유형별로 배치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청소년지도사양성과 배치기간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질적 향상을 통한 유자격화라는 현 양성제도의 1차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93 - '96)배출된 청소년지도사들의 약 22%가 청소년활동지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무직인 경우로 나타나서 취업과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업이 안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규양성자들의 전문적 지도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데다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의 재정이 빈약하여 청소년 기관의 취업기회가 드물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유자격자의 실업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3) 개선방안

(1)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의 적정화

첫째, 현행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의 적정화를 통해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격증을 소유한 청소년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 및 단체지도자 활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기초로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사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단체나 시설의 지도사 배치에 대한 국가지원책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도사를 임용하여 활용하는 기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2)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여부 조사

현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Ⅵ. 요약 및 제언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로, 연수생선발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경력인정 범위를 조정하여 합리적 선발체계를 정립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 관련 전문종사자에 대한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로,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고 참여식 수업 비중을 높여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토록한다.

셋째로, 이수과정 등급별 교과과정의 차별화를 통해 수준을 제고토록하며 이수과정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여 이수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수시간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로, 각 등급별 자격검정의 난이도 조정과 시험문제 구성의 체계화, 면접시험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엄정한 자격검정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섯째, 향후 청소년지도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치대상 및 기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지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자의 청소년 관련업무 취업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_____ (1993~6)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운영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3~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4) “중등교원양성 임용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 _____ (1995)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 _____ (1996) “청소년기본법령집”, 문화체육부
- 송광성 외 1인 (1994) “독일 통일과 청소년”,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윤구 외 1인 (1990)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승희 외 1인 (1994) “주요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